



제433회국회(임시회)
제1차보건복지위원회

화장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검 토 보 고

■ 이수진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15798호)

2026. 3.

보 건 복 지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이지민

목 차

I. 개요	1
II. 총괄적 검토	5
1. 제정안의 법체계 및 주요 내용	5
2. 총괄적 검토의견	11
3. 관계 부처 의견	18
III. 주요 내용별 검토	29
1. 총칙(안 제1장: 안 제1조부터 제5조까지)	29
2. 화장품산업 육성 및 지원계획(안 제2장: 안 제6조부터 제9조까지)	35
3. 혁신형 화장품기업 인증 및 지원(안 제3장 및 부칙: 안 제10조부터 제20조까지 및 부칙)	46
4. 연구개발(안 제4장: 안 제21조부터 제24조까지)	61
5. 화장품산업 기반조성(안 제5장: 안 제25조부터 제32조까지)	67
6. 보칙 및 벌칙(안 제6장: 안 제33조부터 제38조까지)	77

I. 개요

1. 제안경위

- (1) 제 안 자 : 이수진의원 등 11인
- (2) 제 안 일 : 2025. 12. 31.
- (3) 회 부 일 : 2026. 1. 2.

2. 제안이유

화장품산업은 2024년 기준으로 수출액 100억달러를 상회하며 세계 3위, 국내 중소기업 수출 1위 품목으로 급성장하고 있으나 「화장품법」 제33조의 포괄적 산업지원 조항 외에는 별도 구체적 산업 육성 근거법이 부재하여 국가 차원의 체계적 지원 및 육성에는 한계가 있음.

화장품 업계에서도 대다수가 중소기업인 산업 특성에 따라 글로벌 규제 강화 대응과 수출시장 다변화를 위해 기술개발 및 마케팅 지원, 규제 인증 지원 등 산업 전반을 아우르는 통합적 지원체계를 요구하고 있어 화장품산업 육성을 위한 기반 조성과 대외 수출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시책의 수립·시행 및 행정적·재정적 지원체계 등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음.

이를 위해 화장품 영업자 이외에도 원료 공급, 용기 제조, 유통 등 화장품산업에 속하는 전체 사업자를 포괄하여 지원·육성을 추진하고, 범정부 차원의 화장품산업 육성지원 종합계획 수립 및 혁신형 화장품

기업 인증 제도 도입과 전문인력 양성 등의 지원 사업,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연구개발 강화, 화장품산업 종합지원센터 및 정보시스템 구축 등의 국가 차원의 제도적 지원 장치를 마련하는 법률을 제정하여 화장품산업의 지속적인 성장·발전과 세계적으로 각광받고 있는 K-뷰티가 대한민국 주력 수출 품목으로 자리매김하는 데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이 법은 화장품산업의 체계적인 육성·지원과 혁신성 증진 및 국제 협력 강화를 통한 화장품산업의 지속적인 발전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화장품산업의 국제적 경쟁력 강화와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화장품산업”을 「화장품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화장품을 연구개발, 제조·생산, 유통, 판매·수출하거나 이에 관련된 산업으로 정의하고, “화장품기업”을 「화장품법」 제3조에 따른 화장품제조업 또는 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을 한 기업과 같은 법 제3조의2에 따른 맞춤형 화장품판매업 신고를 한 기업, 화장품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기업, 화장품 용기 또는 원료를 제조하거나 공급하는 기업 등으로 정의하며, “혁신형 화장품기업”을 화장품 연구개발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금액을 투자하거나 화장품 수출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화장품기업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인증을 받은 기업으로 정의함(안 제2조).

- 다. 보건복지부장관은 화장품산업의 발전기반 조성 및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5년마다 화장품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보건복지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매년 종합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6조 및 제7조).
- 라. 화장품산업 육성·지원 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및 혁신형 화장품기업의 인증 등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조정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화장품산업 육성·지원 위원회를 두고, 3년마다 화장품산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함(안 제8조 및 제9조).
- 마. 보건복지부장관은 혁신형 화장품기업 인증 신청이 있으면 인증 기준에 따라 위원회 심의를 거쳐 혁신형 화장품기업으로 인증할 수 있으며 인증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하고 인증 전담기관을 지정하여 운영하되, 혁신형 화장품기업에 국가연구개발사업 우선 참여 및 조세에 관한 특례와 연구시설 건축에 관한 특례를 부여하고 각종 부담금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부터 제20조까지).
- 바. 정부는 화장품 품질 평가 기반 구축, 친환경 화장품 원료·제품 생산기술·생산방법의 개발, 그 밖에 화장품산업의 발전을 위한 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화장품산업의 연구개발 및 해외시장 진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화장품 또는 원료의 안전성·기능성 및 피부 특성 등 과학적 분석에 관한 시험·평가 및 관련 연구를 수행하려는 자에게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21조 및 제22조).

사. 화장품산업 연구개발을 효율적으로 촉진하기 위하여 연구개발 정보를 수집하고 보급하도록 하고, 이를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23조).

아. 화장품산업 육성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화장품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5조).

자. 화장품산업 육성과 시장 진출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화장품산업 종합지원센터를 설치하거나 지정하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안 제26조).

차. 화장품산업의 원료·용기 산업의 기반을 강화하고, 유통구조 개선 및 판로지원과 화장품산업의 수출 경쟁력을 높여 해외시장 진출을 활성화하기 위한 각종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안 제27조부터 제29조까지).

카. 화장품산업 육성·지원에 필요한 각종 자료 또는 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 및 제공하기 위해 화장품산업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31조).

타. 화장품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안 제21조 및 제22조, 제27조, 제29조에 따른 지원을 우대할 수 있도록 함(안 제32조).

II. 총괄적 검토

1. 제정안의 법체계 및 주요 내용

□ 제정안은 화장품산업의 체계적인 육성·지원과 혁신성 증진 및 국제협력 강화를 통한 화장품산업의 지속적인 발전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화장품산업의 국제적 경쟁력 강화와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하며, 총 6개 장 38개 조문 및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음.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4조(화장품기업의 책무)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장 화장품산업 육성 및 지원계획 제6조(화장품산업 육성·지원 종합계획) 제7조(화장품산업 육성·지원 시행계획) 제8조(화장품산업 육성·지원 위원회) 제9조(화장품산업 실태조사) 제3장 혁신형 화장품기업 인증 및 지원 제10조(혁신형 화장품기업의 인증 등) 제11조(지위의 승계) 제12조(인증의 유효기간) 제13조(인증의 취소) 제14조(자료의 제공) 제15조(혁신형 화장품기업의 유형별 구분) 제16조(혁신형 화장품기업 인증 전담기관 지정 등) 제17조(국가연구개발사업 등 우대) 제18조(조세에 관한 특례) 제19조(연구시설 건축에 관한 특례) 제20조(각종 부담금의 면제)	제4장 연구개발 제21조(연구개발사업 추진 및 지원) 제22조(시험·평가 및 연구 지원) 제23조(연구개발 정보의 수집과 보급) 제24조(화장품기업 등에 대한 포상) 제5장 화장품산업 기반조성 제25조(전문인력 양성) 제26조(화장품산업 종합지원센터) 제27조(화장품 원료·용기 산업의 육성 및 지원) 제28조(유통구조 개선 및 판로 지원) 제29조(해외시장 진출 지원) 제30조(국제협력) 제31조(화장품산업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제32조(중소·중견기업의 우대) 제6장 보칙 및 벌칙 제33조(청문) 제34조(권한의 위임·위탁) 제35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36조(벌칙) 제37조(양벌규정) 제38조(과태료) 부 칙 제1조(시행일) 제2조(유효기간) 제3조(유효기간 만료에 따른 특례)
--	---

□ 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제정안은 ‘화장품산업’, ‘화장품기업’ 및 ‘혁신형 화장품기업’을 각각 정의하고(안 제2조),

둘째, 보건복지부장관이 5년마다 ‘화장품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도록 하면서(안 제6조), 보건복지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매년 종합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며(안 제7조),

셋째, 종합계획의 수립이나 혁신형 화장품기업의 인증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화장품산업 육성·지원 위원회’를 설치하고(안 제8조),

넷째, 보건복지부장관은 중장기 연구개발 투자계획 등 연구개발 활동의 우수성과 해외 진출 역량·성과 등을 고려하여 혁신형 화장품 기업을 인증할 수 있으며(안 제10조),

다섯째, 정부는 혁신형 화장품기업에 대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 우선 참여나 조세 감면 및 부담금 면제 등의 특례를 제공할 수 있고(안 제17조부터 제20조까지),

여섯째, 정부가 화장품산업의 발전을 위한 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면서 연구개발 관련 정보를 수집·조사하여 이를 체계적·종합적으로 관리·보급하여야 할 책무를 규정하며(안 제4장),

일곱째, 전문인력 양성, 화장품산업종합지원센터 설치·지정, 해외 시장 진출 지원, 화장품산업통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 등 정부가

화장품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기반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하되, 중소·중견기업을 우대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임(안 제5장).

< 제정안의 주요 내용 요약 >

화장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조 문	주요 내용
제1조(목적)	■ 화장품산업의 체계적인 육성·지원과 혁신성 증진 및 국제 협력 강화를 통한 화장품산업의 지속적인 발전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화장품산업의 국제적 경쟁력 강화와 국가 경제 발전에 이바지
제2조(정의)	■ 화장품산업: 「화장품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화장품을 연구 개발, 제조·생산, 유통, 판매·수출하거나 이에 관련된 산업 ■ 화장품기업: 국내에서 화장품산업과 관련된 경제활동을 수행하는 기업 ■ 혁신형 화장품기업: 화장품 연구개발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금액을 투자한 화장품기업 또는 화장품 수출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화장품 기업 중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인증을 받은 화장품기업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화장품산업의 기반 조성 및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그 시책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기술적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여야 함
제4조(화장품기업의 책무)	■ 화장품산업의 혁신성 강화 등을 통하여 화장품산업의 지속적 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도록 노력 ■ 화장품 품질 향상을 위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정책에 적극 참여하고 제도개선에 협력하도록 노력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 화장품산업 육성·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름
제6조(화장품산업 육성·지원 종합계획)	■ 보건복지부장관은 화장품산업의 발전기반 조성 및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5년마다 화장품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
제7조(화장품산업 육성·지원 시행계획)	■ 보건복지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매년 종합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
제8조(화장품산업 육성·지원 위원회)	■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화장품산업 육성·지원 위원회 설치 * ① 종합계획·시행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② 혁신형 화장품기업 인증, 인증취소 및 지위 승계에 관한 사항, ③ 그 밖에 화장품산업 육성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심의·조정

화장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조 문	주요 내용
제9조(화장품산업 실태조사)	■ 보건복지부장관은 종합계획·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추진하기 위하여 3년마다 화장품산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
제10조(혁신형 화장품기업의 인증 등)	■ 보건복지부장관이 화장품기업의 신청이 있는 경우 화장품산업 육성·지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혁신형 화장품기업 인증 * 지정요건: ① 화장품산업 연구 인력 및 연구개발시설 등 인적·물적 투입자원의 우수성, ② 화장품산업 연구개발의 기획, 중장기 연구개발 투자계획 등 연구개발 활동의 우수성, ③ 연구개발 성과의 기술적·경제적 우수성, ④ 화장품산업 해외 진출 역량 및 성과의 우수성 등에 관한 사항
제11조(지위의 승계)	■ 보건복지부장관은 혁신형 화장품기업의 지위를 승계받고자 하는 기업의 신청이 있는 경우 화장품산업 육성·지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승계 여부를 결정
제12조(인증의 유효기간)	■ 혁신형 화장품기업 인증의 유효기간은 인증을 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하되, 재평가를 통한 연장 가능
제13조(인증의 취소)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거나 인증기준을 충족하지 아니하게 된 때 혁신형 화장품기업 인증 취소 가능
제14조(자료의 제공)	■ 혁신형 화장품기업의 인증을 신청한 기업 등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자료 요구에 응하여야 함
제15조(혁신형 화장품기업의 유형별 구분)	■ 연간 매출액·증가율,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수출액의 비율·증가율 등을 고려하여 혁신형 화장품기업의 유형 구분
제16조(혁신형 화장품기업 인증 전담기관 지정 등)	■ 혁신형 화장품기업에 대한 인증·재평가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전담기관 지정 및 경비 지원 가능
제17조(국가연구개발사업 등 우대)	■ 정부는 화장품 관련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에 혁신형 화장품기업이 우선 참여하게 할 수 있음
제18조(조세에 관한 특례)	■ 정부는 혁신형 화장품기업에 대하여 법인세·소득세·취득세·등록면허세 및 재산세 등의 조세를 감면할 수 있음
제19조(연구시설 건축에 관한 특례)	■ 혁신형 화장품기업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지역(녹지지역 등 제외) 중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지역에 연구시설을 건축할 수 있음
제20조(각종 부담금의 면제)	■ 혁신형 화장품기업의 연구시설에 대하여는 개발부담금, 교통유발부담금,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및 대체초지조성비를 면제할 수 있음
제21조(연구개발사업 추진 및 지원)	■ 정부는 화장품산업의 발전을 위한 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있고, 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음

화장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조 문	주요 내용
제22조(시험·평가 및 연구 지원)	정부는 화장품 또는 원료의 안전성·기능성 및 피부 특성 등 과학적 분석에 관한 시험·평가 및 관련 연구를 수행하려는 자에 대하여 경비 지원 가능
제23조(연구개발 정보의 수집과 보급)	정부는 화장품산업의 국내외 연구개발 동향, 시장동향 등 혁신형 화장품기업의 연구개발 관련 정보를 수집·조사하여 이를 체계적·종합적으로 관리·보급하여야 하며, 관련 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음
제24조(화장품기업 등에 대한 포상)	정부는 화장품산업의 육성 또는 화장품 연구개발의 촉진에 기여한 기업·개인을 선정·포상할 수 있음
제25조(전문인력 양성)	정부는 화장품산업의 육성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고, 관련 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음
제26조(화장품산업 종합지원센터)	보건복지부장관은 화장품산업 종합센터를 설치하거나 관련 법인 등을 화장품산업 종합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음
제27조(화장품 원료·용기 산업의 육성 및 지원)	정부는 화장품 원료·용기 산업의 기반을 강화하기 위하여 관련 연구개발 및 사업화 등을 지원할 수 있음
제28조(유통구조 개선 및 판로 지원)	정부는 물류시설의 확충, 유통 전문기업의 역량 강화, 중소 화장품기업의 공동 판로 개척을 위한 온·오프라인 플랫폼 구축·운영 등을 지원할 수 있음
제29조(해외시장 진출 지원)	정부는 화장품산업 관련 정보·기술·인력의 국제교류나 해외 전시회 참가 등 화장품산업의 수출 경쟁력을 높이고 해외시장 진출을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음
제30조(국제협력)	정부는 화장품기업 또는 관련 단체가 외국의 기관·단체 등과 산업협력활동을 추진하는 경우 관련 정보의 수집·제공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음
제31조(화장품산업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보건복지부장관은 화장품산업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고, 이 경우 「화장품법」 제33조의3에 따른 화장품통합정보시스템과 상호 연계할 수 있음
제32조(중소·중견기업의 우대)	정부는 화장품 중소·중견기업에 대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대할 수 있음
제33조(청문)	보건복지부장관은 혁신형 화장품기업 인증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함
제34조(권한의 위임·위탁)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이나 지원업무 일부를 소속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등에 위탁할 수 있음

화장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조 문	주요 내용
제35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 화장품산업 육성·지원 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자나 전문기관의 임직원 등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의제함
제36조(벌칙)	■ 혁신형 화장품기업 인증을 받지 아니하고서 인증서·인증마크를 제작 사용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인증을 사칭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제37조(양벌규정)	■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6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원칙적으로 과하도록 함
제38조(과태료)	■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부칙 제1조(시행일)	■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부칙 제2조(유효기간)	■ 제19조(연구시설 건축에 관한 특례) 및 제20조(각종 부담금의 면제)는 이 법 시행일부터 10년간 유효하도록 함
부칙 제3조(유효기간 만료에 따른 특례)	■ 부칙 제2조에 따른 유효기간 만료 당시 특례를 적용받는 연구시설에 대하여는 유효기간 만료 후에도 계속하여 각 특례를 적용

2. 총괄적 검토의견

□ 제정안은 ‘화장품산업’을 “「화장품법」 제2조제1호1)에 따른 화장품을 연구개발, 제조·생산, 유통, 판매·수출하거나 이에 관련된 산업”으로 정의하면서,

‘화장품의 제조·판매에 사용되는 용기 또는 원료를 제조·공급하는 기업’과 ‘화장품 제품 유통 또는 소매 판매를 주된 사업으로 하는 기업’ 등을 이 법에 따른 ‘화장품기업’의 범주에 포함함으로써 소재·원료와 용기·포장재 등 부자재 및 생산·판매 등으로 이어지는 가치사슬(value chain) 전반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국내에서 화장품산업과 관련된 경제활동을 수행하는 화장품기업 중 연구개발(R&D)·수출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및 기준에 해당하는 화장품기업을 보건복지부장관이 ‘혁신형 화장품기업’으로 인증하여 각종 특례나 우대조치 등의 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최근의 수출 호조세를 기반으로 한 우리나라 화장품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지원하고 국제적 경쟁력을 한층 더 강화하려는 취지인 것으로 보임.

- 참고로, 우리나라의 2025년도 화장품 수출 실적(약 114.3억달러)은 역대 최대치를 경신한 것으로 잠정 집계되고 있고(2026년 2월 기준), 수출대상국도 전년 대비 50개국(29%) 늘어난 202개국으로 다변화되었음.

1) 「화장품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화장품”이란 인체를 청결·미화하여 매력을 더하고 용모를 밝게 변화시키거나 피부·모발의 건강을 유지 또는 증진하기 위하여 인체에 바르고 문지르거나 뿌리는 등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사용되는 물품으로서 인체에 대한 작용이 경미한 것을 말한다. 다만, 「약사법」 제2조제4호의 의약품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 최근 10년간 우리나라 화장품 수출 실적 >

(단위: 억달러, %)

구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23년	'24년	'25년 (잠정)
수출액	41.8	49.4	62.6	65.2	75.7	91.8	79.5	84.6	101.8	114.3
증감률 (전년대비)	61.4	18.2	26.7	4.2	16.1	21.3	△13.4	6.4	20.3	12.3

자료: 보건복지부

< 최근 5년간 우리나라 화장품 수출 실적 상위 5개국 현황 >

(단위: 백만달러, %)

순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잠정)		
	국가	금액	증감	국가	금액	증감	국가	금액	증감	국가	금액	증감	국가	금액	증감
1위	중국	4,882	28.1	중국	3,612	△26.0	중국	2,777	△23.1	중국	2,492	△10.3	미국	2,185	15.1
2위	미국	841	17.7	미국	839	△0.2	미국	1,214	44.7	미국	1,899	56.4	중국	2,018	△19.2
3위	일본	784	22.4	일본	746	△4.9	일본	802	7.5	일본	1,036	29.2	일본	1,087	5.0
4위	홍콩	578	△9.5	홍콩	394	△31.8	홍콩	502	27.3	홍콩	580	15.5	홍콩	698	21.6
5위	베트남	304	15.4	베트남	375	23.4	베트남	498	32.7	베트남	529	6.2	베트남	477	△9.8
	전체	9,184	21.3	전체	7,953	△13.4	전체	8,463	6.4	전체	10,178	20.3	전체	11,425	12.3

자료: 보건복지부

< 화장품 유형별 수출액 현황: 2024~2025(잠정) >

(단위: 백만달러, %)

구분	계	기초	색조	인체 세정	두발	눈화장	영유아	방향	손발톱	체취 방지
'24년	10,178	7,654	1,345	456	413	195	41	39	25	3
'25년 (잠정)	11,425	8,538	1,506	582	478	197	26	57	32	3
비중	100.0	74.7	13.2	5.1	4.2	1.7	0.5	0.3	0.2	0.0

자료: 보건복지부

□ 다만, 제정안과 관련하여서는 다음의 사항이 중점적으로 논의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 첫째, 현재는 보건복지부장관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화장품산업 진흥을 위한 기반조성 및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한 「화장품법」 제33조²⁾의 포괄적 산업지원 조항 외에 화장품산업 육성·지원을 위한 개별법이 없는데, 제정안은 이로 인해 화장품산업에 대한 체계적 지원이 어렵다는 인식 하에 화장품산업 육성·지원을 위한 근거법을 제정하려는 것임.

그런데, 보건복지부 소관 2026년도 예산에 편성된 ‘바이오헬스산업 육성 지원’ 세부사업 중 ‘화장품산업 경쟁력 강화’ 내역사업의 예산액은 전년도 본예산(132억 7,700만원) 대비 308억 5,500만원(232.4%)이 증액된 441억 3,200만원으로, 화장품 안전성 평가와 해외 마케팅 등을 지원하는 ‘화장품 종합지원센터 운영’이나 ‘피부 유전체 분석센터 구축’, ‘원료 국산화’ 등 화장품산업 육성을 위한 각종 내내역사업이 편성·추진되고 있으며,

동 세부사업에 ‘화장품산업 전문인력 양성’(2026년도 예산액 4억 6,300만원)이나 ‘K-바이오헬스 글로벌 진출 및 수출 다변화 지원(2026년도 예산액 245억 2,300만원)’ 등의 다양한 내역사업이 편성된 점 등을 고려할 때 제정 실익 측면에서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

2) 「화장품법」

제33조(화장품산업의 지원) 보건복지부장관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화장품산업의 진흥을 위한 기반조성 및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재원을 마련하고 기술개발, 조사·연구 사업, 해외 정보의 제공, 국제협력체계의 구축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 2026년도 보건복지부 소관 '화장품산업 경쟁력 강화' 내역사업 예산 >

(단위: 백만원)

구 분		'26 예산
◇ '화장품산업 경쟁력 강화' 내역사업		44,132
▶ '화장품산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 내내역사업		32,369
● 화장품 종합지원센터 운영	○ 글로벌 신흥시장 진출 지원	250
	○ 해외 바이어 초청 상담회	100
	○ K-브랜드 해외 홍보관 지원	300
	○ 해외 화장품 판로개척 지원	283
	○ 해외 한류 박람회 참가	900
	○ 대형 한류문화축제 참가	200
	○ 화장품 다빈도 성분 안전성 정보 수집	650
	○ 화장품 다빈도 천연성분 안전성 평가	737
	○ 화장품 안전성 검증위원회	200
	○ 화장품 안전성 데이터베이스 구축·운영	430
	○ 국가별 규제정보 제공 및 국제협력	150
	○ 인건비 및 경상비	370
● 국내 K-뷰티 체험홍보관 운영		4,179
● 피부 유전체 분석센터 구축		1,120
● 미국 OTC 제조소 등록		1,300
● AI 안전성 통합정보 제공 및 관리		1,000
● 해외 물류기지 구축		9,000
● 온라인 유통 플랫폼 디지털 마케팅		1,500
● 원료 국산화		4,300
● 중소화장품 해외진출 지원		5,400
▶ '남원 천연물 화장품 시험검사임상센터 구축' 내내역사업		2,192
▶ '오송 국제 K-뷰티스쿨 설립' 내내역사업		4,751
▶ '충북 글로벌 클린화장품 산업화 기반 구축' 내내역사업		4,820

자료: 보건복지부

□ 둘째, 제정안은 보건복지부장관이 5년마다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면서(안 제6조) 혁신형 화장품기업 인증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는 화장품산업 육성·지원 위원회를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설치하는(안 제8조) 등 보건복지부를 주무부처로 하여 화장품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정책이 추진되도록 하려는 것으로 보이는데,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상 화장품산업의 육성·지원 및 기반구축에 관한 사무는 보건복지부 소관이지만,³⁾ 화장품제조업·화장품책임판매업의 등록을 포함한 화장품의 안전에 관한 사무는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관장하고 있으므로,⁴⁾ 이 법의 제정 목적 및 취지를 효과적으로 구현하기 위해서는 복수의 중앙행정기관 간에 정책 및 업무분장의 명확한 조정이 요구되는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임.

- 참고로, 화장품의 안전·품질 관리, 경쟁력 강화 및 수출 지원을 위하여 국무총리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관련 계획을 제출받아 5년마다 화장품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관련 사항을 협의·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의 화장품경쟁력 강화협의회를 설치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서영석의원이 대표발의한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5378호)이 우리 위원회에 계류되어 있음.

3)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7조(보건산업정책국)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2. 보건의료산업(화장품·의약품·의료기기 등 산업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육성·지원 및 기반구축에 관한 사항

4)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조(직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농수산물 및 그 가공품, 축산물 및 주류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건강기능식품·의약품·마약류·화장품·의약외품·의료기기 및 위생용품 등(이하 “식품·의약품등”이라 한다)의 안전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 셋째, 제정안은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제약산업법」”이라 한다)과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이하 “「의료기기산업법」”이라 한다)에 따른 ‘혁신형 제약기업⁵⁾’과 ‘혁신형 의료기기기업⁶⁾’ 인증제도와 유사한 ‘혁신형 화장품기업 인증제도’를 도입하고 각종 우대조치를 제공함으로써 화장품기업의 연구개발과 해외시장 진출 등을 촉진하려는 취지로 보이는데,

혁신형 제약·의료기기기업은 ‘외국계 제약기업’이나 ‘외국인투자기업인 의료기기기업’도 그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고, ‘연구개발 투자 규모(실적)’를 인증 요건으로 정하고 있지만,

혁신형 화장품기업을 정의한 안 제2조제3호에서는 ‘연구개발 투자 규모’(가목) 외에 ‘수출 기준’(나목)을 그 요건으로 함께 규정하고 있어 제정안에 따라 혁신형 화장품기업에 제공되는 조세 감면이나 부담금 면제 특례 등의 우대조치가 세계무역기구(WTO)가 금지하는 수출보조금(Export Subsidy)에 해당하게 될 소지가 있는 점을 고려하여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

5)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3. “혁신형 제약기업”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으로서 제7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인증을 받은 제약기업을 말한다.

가. 신약 연구개발 등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투자를 하는 제약기업

나. 국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신약 연구개발 투자실적이 있거나 신약 연구개발을 수행하고 있는 외국계 제약기업

6)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혁신형 의료기기기업”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으로서 제10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인증을 받은 의료기기기업을 말한다.

가. 의료기기의 연구개발 등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투자를 한 의료기기기업

나. 국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의료기기 연구개발 투자실적이 있거나 의료기기 연구개발을 수행하고 있는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인 의료기기기업

다. 제21조에 따라 지정된 혁신의료기기를 연구개발 및 생산하는 의료기기기업

- 참고로, WTO의 ‘보조금 및 상계조치에 관한 협정’(Agreement on Subsidies and Countervailing Measures) 부록(Annex) I에서는 금지되는 수출보조금의 예시로 ‘정부가 수출 실적에 따라 기업이나 산업에 직접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The provision by governments of direct subsidies to a firm or an industry contingent upon export performance)’을 규정하고 있음.

3. 관계 부처 의견

가. 보건복지부

- 화장품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가 차원의 체계적 지원·관리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제정안에 동의하며, 동 법률안이 제정될 경우 보건복지부는 주관부처로서 종합계획 수립, 화장품산업 육성·지원 위원회 및 혁신형 화장품기업 인증제 운영 등을 통하여 우리나라 화장품산업의 지속적인 성장·발전과 K-뷰티의 글로벌 위상 제고에 최선의 역할을 다할 것임.
- 한편 제정안에 따라 혁신형 화장품기업에 제공되는 조세 감면이나 부담금 면제 특례 등의 우대조치가 세계무역기구(WTO)가 금지하는 수출보조금(Export Subsidy)에 해당하게 될 소지와 관련하여서는, 국내 화장품기업 특성상 중소기업의 수출 비중⁷⁾과 생산액 대비 수출 비율⁸⁾이 매우 높은 상황에서 우수 기업을 발굴·지원하려면 수출 실적을 불가피하게 고려하여야 하는 상황으로, 제정안의 “수출”이라는 직접적 문구를 ‘해외진출 역량’으로 대체하거나 하위 법령에 위임하는 방안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7) 2024년 우리나라 화장품 수출 기업 9,257개사 중 중소기업은 8,987개사로 약 97.1%임(자료: 보건복지부).

8) (수출/생산 비율) ('20) 58.9% → ('21) 63.1% → ('22) 75.6% → ('23) 76.1% → ('24) 79.2%(자료: 보건복지부).

나. 식품의약품안전처

□ 제정안은 주로 우리나라 화장품산업 육성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고 있고, ‘국제협력’에 관한 안 제30조는 포괄적·선언적인 반면 구체적이지 아니하여 안 제1조에서 이 법의 목적 중 하나로 ‘국제협력 강화’를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며,

우리나라 화장품 영업자가 해외 인·허가 및 등록에 필요한 규제를 이행할 수 있도록 규제당국 간에 협의하며 상호 인증을 강화하는 것이 국제협력의 핵심인데, 이는 이미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화장품법」 제33조의2⁹⁾에 따라 수행하고 있는 업무이므로 ‘국제협력’을 이 법의 주요 목적 중 하나로 보기는 어려움.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화장품 글로벌 규제조화 지원센터’를 운영 중이며, 국제화장품규제조화협의체(International Cooperation on Cosmetics Regulation; ICCR) 회원기관으로서 화장품 규제와 관련된 국제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있음.

□ 한편 K-뷰티 경쟁력 확보를 전폭 지원하고 행정 역량을 결집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화장품산업의 발전기반 조성 및 국제경쟁력 강화를 특정 부처의 업무로 단일화하는 대신, 개별 부처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는 ‘화장품산업 육성 진흥’에 주력하고, ‘화장품 안전·품질’과 ‘화장품 수출 진흥’은 각각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중소벤처기업부가 주관하는 분과위원회를 운영하되,

9) 「화장품법」

제33조의2(국제협력)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화장품의 수출 진흥 및 안전과 품질관리 등을 위하여 수입국·수출국과 협약을 체결하는 등 국제협력에 노력하여야 한다.

여러 부처와 관계된 사안의 경우 부처 간 협력과 갈등을 조정·협의를 하는 거버넌스를 국무조정실 중심으로 구축하는 것이 바람직한 측면이 있으므로, 안 제6조부터 제8조까지에서 정하고 있는 종합계획·시행계획 및 화장품산업 육성·지원 위원회와 관련된 사항은 삭제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 참고로, 국가적으로 조정·협의를 필요한 마약류 대책 업무의 컨트롤타워는 국무조정실로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의4¹⁰⁾에 따라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된 마약류대책협의회 의장은 국무조정실장이 맡고 있으며, 국무조정실·식품의약품안전처(간사) 및 교육부·외교부·법무부·행정안전부·보건복지부·기획예산처·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국가정보원·대검찰청·관세청·경찰청·해양경찰청 소속 고위 공무원이 위원으로 참여함.

□ 아울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화장품법」 제5조제5항·제6항¹¹⁾에

10)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의4(마약류대책협의회) ① 마약류의 오남용을 방지하고 마약류 문제에 대응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마약류대책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조정한다.

1.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추진에 관한 사항

2. 마약류 관련 국내외 정보의 공유 및 관리, 국제협력·수사·단속·치료·재활·교육·홍보 등을 위한 관계 기관 및 단체의 협조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마약류와 관련하여 관계 기관 및 단체의 협의·조정이 필요한 사항

③ 협의회는 의장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협의회 의장은 국무조정실장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복수의 차관·차장 또는 상임위원이 있는 기관은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차관·차장 또는 상임위원으로 한다.

1. 교육부차관·외교부차관·법무부차관·행정안전부차관·보건복지부차관·기획예산처차관·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상임위원·국가정보원차장·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대검찰청차장·관세청차장·경찰청차장·해양경찰청차장 및 국무조정실 사회조정실장

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3. 마약류와 관련하여 학계·언론계·기관·단체에 종사하는 등 마약류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의장이 위촉하는 사람

⑤ 협의회에 간사 2명을 둔다. 이 경우 간사는 국무조정실 및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의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⑥ 협의회 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분과위원회 및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

⑦ 협의회와 제6항에 따른 분과위원회 및 실무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1) 「화장품법」

제5조(영업자의 의무 등) ⑤ 화장품책임판매업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화장품의 생산실적 또는 수입실적, 화장품의 제조과정에 사용된 원료의 목록 등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원료의 목록에 관한 보고는 화장품의 유통·판매 전에 하여야 한다.

⑥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맞춤형화장품에 사용된 모든 원료의 목록을 매년 1회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따라 화장품책임판매업자·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로부터 화장품 생산·수입실적, 사용된 원료의 목록 등에 대한 보고를 받고 있고, 관련 통계는 국가승인통계(승인번호 145011)로서 매년 공표하고 있는바, 안 제9조의 실태조사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 외에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계 부처가 수행하는 업무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고,

「화장품법」 제4조의2제3항¹²⁾에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화장품 원료 안전성 자료의 제공 등 필요한 행정적·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안 제22조제1항 중 ‘화장품 또는 원료의 안전’과 관련된 지원업무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사항임을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음.

□ 또한, 「화장품법」 제18조의3¹³⁾에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원료 안전성 정보의 제공이나 화장품 안전성 평가를 위한 각종 정보를 수집·관리·분석·평가·제공하는 ‘화장품안전정보센터’의 운영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안 제26조의 화장품산업 종합지원 센터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규제정보 지원사업과 연계될 필요가

12) 법률 제21032호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

제4조의2(화장품 안전성 평가)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화장품책임판매업자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인 경우 제1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원활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화장품 안전성 평가 자료 작성 방법에 대한 지도·교육, 원료 안전성 자료의 제공 등 필요한 행정적·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2025. 12. 30. 본조신설, 2028. 1. 1. 시행]

13) 법률 제21032호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

제18조의3(화장품안전정보센터 지정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화장품 안전성 평가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관계 기관·법인 또는 단체를 화장품안전정보센터(이하 “화장품안전정보센터”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② 화장품안전정보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화장품 안전성 평가에 관한 전문적 기술지원 및 자문에 대한 응답
2. 원료 안전성 정보 제공
3. 화장품 안전성 평가를 위한 각종 정보의 수집·관리·분석·평가 및 제공
4. 안전성 평가자 양성 지원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업무에 필요한 시험·조사·연구 및 교육·홍보
6. 그 밖에 화장품 안전성 확보에 관한 사항으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사업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화장품안전정보센터에 대하여 제2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화장품안전정보센터 지정의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25. 12. 30. 본조신설, 2028. 1. 1. 시행]

있고, 보건복지부장관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그 운영 현황을 보고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안 제29조 각 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해외시장 진출 지원 사업 가운데 인·허가나 규제와 관련된 제8호부터 제10호까지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화장품법」 제33조 및 제33조의2에 따라 예산사업으로 수행하고 있고, 화장품 안전성 평가 정보 제공 및 컨설팅 등의 지원은 같은 법 제18조의3에 따른 화장품안전정보센터의 담당 업무이므로 향후 사업의 중복이나 혼선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각 부처의 업무가 명확히 규정될 필요가 있음.

- 이외에도 「화장품법」 제33조의3¹⁴⁾에 따른 화장품통합정보시스템은 영업상의 비밀 및 개인정보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안 제31조에 따른 화장품산업통합정보시스템과 상호 연계하려면 정보 취득자의 자격, 활용성 등 법적 사항과 기술적 요소 등에 대하여 사전 검토·협의를 필요한 점이 반영될 필요가 있고, 안 제32조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중소기업·중견기업의 우대에 관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부분은 우대 주체가 ‘정부’이므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수정될 필요가 있음.

14) 법률 제21032호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

제33조의3(화장품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화장품 안전 관리에 필요한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화장품통합정보시스템(이하 “통합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관계 기관·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등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2025. 12. 30. 본조신설, 2026. 12. 31. 시행]

다. 재정경제부

- 혁신형 화장품기업에 대한 조세특례를 규정한 안 제18조와 관련하여, 조세특례 신설은 「조세특례제한법」 등 일부 법률로써만 가능하고, 주기적 평가를 거쳐 비과세나 감면 사항을 정비하도록 한 「조세특례제한법」의 취지에 상충되는 점이 고려될 필요가 있으며,¹⁵⁾ 개별법에 조세특례에 관한 사항이 없더라도 필요한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하여 세제지원이 가능하게 되므로 개별법에 조세특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할 실익이 없음.

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중앙행정기관별로 다르게 운영되어오던 국가연구개발사업 규정을 통합한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되도록 한 취지를 고려할 때¹⁶⁾ 개별 법률에 그 적용 예외를 인정할 경우 연구행정 부담이 심화될 수 있으므로, 정부가 화장품 연구개발을 위한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에 혁신형 화장품기업이 우선 참여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한 안 제17조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

15) 「조세특례제한법」

제142조(조세특례의 사전·사후관리) ⑤ 재정경제부장관은 주요 조세특례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연도에 적용기한이 종료되는 사항(지원대상의 소멸로 조세특례의 폐지가 명백한 사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제외한다)으로서 연간 조세특례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금액 이상인 조세특례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전문적인 조사·연구기관이 목표달성도, 경제적 효과, 소득재분배효과, 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에 대해 평가한 결과를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6)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국가연구개발사업 중 다른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된 기관의 기본사업(정관에 따른 설립목적에 달성하기 위하여 정부가 직접 출연한 예산으로 수행하는 연구개발사업을 말한다)의 경우에 제9조부터 제12조까지, 제14조 및 제1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다른 법률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법률을 적용한다.

마. 행정안전부

- 「정부조직법」은 ‘자문기관’의 경우 대통령령에 근거하여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고,¹⁷⁾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에서는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와 연계·통합하거나 부처 소속의 정책자문위원회를 활용함으로써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하되, 위원회를 설치하는 경우에도 5년 이내의 존속기한을 법령에 명시하도록 되어 있는바,¹⁸⁾

안 제8조에 따른 ‘화장품산업 육성·지원 위원회’는 보건복지부 소속의 자문위원회로서 기존에 설치된 위원회(보건의료정책심의 위원회 등)를 활용하는 방안 등이 고려될 필요가 있고, 이를 신설 하더라도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존속기한을 설정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지방세 특례규정 신설 등 감면 여부는 지방세 관계법에서만 규정 가능한 사항이므로, 선언적 의미로 볼 수 있는 안 제18조의 지방세 특례규정은 삭제할 필요가 있음.

17) 「정부조직법」

제4조(부속기관의 설치) 행정기관에는 그 소관사무의 범위에서 필요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험연구기관·교육훈련기관·문화기관·의료기관·제조기관 및 자문기관 등을 둘 수 있다.

18)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중복 위원회의 설치 제한 등) ① 행정기관의 장은 그 기관 또는 관련 기관 내에 설치되어 있는 위원회와 성격과 기능이 중복되는 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행정기관의 장은 성격·기능이 유사하거나 관련이 있는 복수의 위원회를 하나의 위원회와 분과위원회, 전문위원회 등의 체계로 연계하여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③ 행정기관의 장은 불필요한 위원회가 설치되지 아니하도록 소관 정책에 관한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반영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통합하여 설치·운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의2(정책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① 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정책에 관한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반영하기 위하여 정책자문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행정기관의 장은 제7조에 따라 성격과 기능이 중복되거나 불필요한 위원회가 설치되지 아니하도록 위원회를 새로 설치하는 대신 정책자문위원회를 활용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책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위원회의 존속기한) ② 행정기관의 장은 자문위원회등을 설치할 경우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기한 내에서 존속기한을 정하여 법령에 명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존속기한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바. 농림축산식품부

- 초지 전용에 따른 대체초지의 조성을 위하여 원인자에게 부과하는 부담금인 대체초지조성비는 축산발전기금의 재원으로서, 초지 현황 및 보전 필요성 등을 고려할 때 혁신형 화장품기업의 연구시설에 대한 대체초지조성비 면제에 관한 사항이 규정된 안 제20조제4호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며, 「부담금관리 기본법」의 취지를 고려할 때 부담금 감면 조항은 해당 부담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개별 법령에 규정되어야 하고, 다른 법률에서 부담금 감면제도를 각기 운용하는 것은 국민의 불필요한 오해와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사. 산업통상부

- 정부의 재정적 기여가 존재하고, 부담금 면제 등 각종 혜택이 존재하며, 수출 실적에 따라 그 혜택이 제공되는 경우에는 WTO 규범상 금지보조금에 해당할 소지가 있고,

제정안의 ‘혁신형 화장품기업’이라는 특정성 요건 하에서 다른 국가의 산업에 부정적 영향을 끼친 것으로 입증될 경우 제소 및 상계관세 조치 대상이 될 수 있음.

아. 국토교통부

- 용도지역은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을 제한함으로써 토지를 경제적·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공공복리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서로 중복되지 아니하게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으로서,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은 국토계획법령에 따른 용도지역별 건축제한(용도·종류·규모 등), 건폐율 및 용적률 기준 등에 적합하게 입지하여야 하는데,

안 제19조와 같이 개별 법률에서 용도지역별 건축 제한의 예외를 규정할 경우 계획되지 아니한 입지로 인한 난개발, 도시경관·환경 저해, 기반시설 부족 등 부작용이 우려되고, 용도지역 제도의 취지를 고려할 때 국토계획법령의 용도지역별 건축제한을 따르는 것이 타당하므로 안 제19조는 삭제될 필요가 있음.

- 아울러 「부담금관리 기본법」 제5조제5항¹⁹⁾에서는 부담금 제도의 관리 일원화 및 체계 유지를 고려하여 개별 부담금의 감면에 관한 사항은 소관법령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개발부담금·교통유발 부담금의 면제에 관한 사항이 규정된 안 제20조제1호 및 제2호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

- (개발부담금) 개발부담금 감면은 적정한 개발이익의 환수 및 배분이라는 제도의 정책목적과 개발부담금의 준조세적 성격을 고려할 때 필요최소한으로 감면대상을 한정하고, 형평성의 원칙을 엄격히 적용할 필요가 있으며, 특정지역 및 산업 활성화 등을

19) 「부담금관리 기본법」

제5조(부담금 부과 원칙) ⑤ 부담금의 부과, 감면, 납부방법 및 환급 절차에 관하여는 해당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정하되, 현금,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위한 개별법상 감면 요구를 전부 수용할 경우 개발부담금 제도가 형해화되고 지역균형사업에 투입할 국가·지방 세외수입이 감소할 우려가 있음.

- (교통유발부담금) 교통유발부담금은 교통을 유발하는 연면적 1,000m² 이상의 모든 시설물에 매년 부과하는 경제적 부담으로, 면제 대상을 최소화하면서 부과 시 형평성 원칙을 엄격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으며, 현재도 경감제도를 운영하고 있어 자발적으로 교통량 감축활동을 이행하면 최대 90% 이상의 감면이 가능하므로 특정 시설에 대한 특혜성 면제 등은 성실히 감축활동에 참여한 소유자와의 형평성 문제를 야기할 수 있고,

특정 시설물에 대하여 교통유발부담금을 감면하게 되면 해당 시설물이 추후 교통혼잡을 유발하여 사회·경제적 손실을 발생 시키더라도 그 책임을 적시에 묻기 어렵게 되는 측면이 있음.

자. 중소벤처기업부

- 제정안의 지원대상인 화장품기업에 중소·벤처기업이 포함되는 점을 고려할 때 관련 사무를 특정 부처 소관으로 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아니하므로, 종합계획 수립(안 제6조), 화장품산업 실태조사(안 제9조), 화장품산업 종합지원센터 설치(안 제26조) 및 화장품산업통합정보 시스템 구축(안 제31조)의 주체를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에서 ‘정부’로 수정하고, 같은 취지에서 화장품산업 육성·지원 위원회(안 제8조)는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될 필요가 있음.

차. 기획예산처

- 혁신형 화장품기업의 인증 방법·절차와 그 인증·재인증 및 인증 취소 업무를 수행하는 전담기관 지정 요건 등이 구체화되지 아니한 상황에서 전담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건복지부장관이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고 명문화한 안 제16조제2항은 시기상조인 측면이 있으므로 삭제될 필요가 있음.
- 또한, 혁신형 화장품기업의 연구시설에 대한 부담금 면제에 관한 사항이 규정된 안 제20조는 부담금 운용의 공정성·투명성 및 체계적 관리를 위한 「부담금관리 기본법」의 취지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측면이 있으므로, 부담금별 소관부처가 부담금 부과 목적과 취지, 타 지역 및 사업과의 형평성, 면제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각 근거법령에 부담금 면제에 관한 사항을 개별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음.

Ⅲ. 주요 내용별 검토

1. 총칙(안 제1장: 안 제1조부터 제5조까지)

가. 제정안의 내용

□ 제정안은 화장품산업의 체계적인 육성·지원과 혁신성 증진 및 국제협력 강화를 통한 화장품산업의 지속적인 발전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화장품산업의 국제적 경쟁력 강화와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이 법의 목적으로 규정하면서(안 제1조), ‘화장품산업’, ‘화장품기업’ 및 ‘혁신형 화장품기업’의 용어를 각각 정의하고(안 제2조),

화장품산업의 기반 조성과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시책의 수립·시행 및 그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기술적 지원 방안 등의 마련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규정하면서(안 제3조), 화장품기업에 대하여는 화장품산업의 혁신성을 강화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정책에 적극 참여하며 제도개선에 협력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는 책무를 규정하며(안 제4조),

화장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조).

【제정안】 총칙(안 제1장)
제1조(목적) 이 법은 화장품산업의 체계적인 육성·지원과 혁신성 증진 및 국제협력 강화를 통한 화장품산업의 지속적인 발전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화장품산업의 국제적 경쟁력 강화와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정안】 총칙(안 제1장)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화장품산업”이란 「화장품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화장품을 연구개발, 제조·생산, 유통, 판매·수출하거나 이에 관련된 산업을 말한다.
2. “화장품기업”이란 국내에서 화장품산업과 관련된 경제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을 의미한다.
 - 가. 「화장품법」 제3조에 따른 화장품제조업 등록을 한 기업
 - 나. 「화장품법」 제3조에 따른 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을 한 기업
 - 다. 「화장품법」 제3조의2에 따른 맞춤형화장품판매업 신고를 한 기업
 - 라.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2에 따른 벤처기업 중 화장품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기업
 - 마. 「화장품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화장품의 제조·판매에 사용되는 용기 또는 원료를 제조하거나 공급하는 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
 - 바. 화장품 제품 유통 또는 소매 판매를 주된 사업으로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
3. “혁신형 화장품기업”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으로 제10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인증을 받은 화장품기업을 말한다.
 - 가. 화장품 연구개발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금액을 투자한 화장품기업
 - 나. 화장품 수출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화장품기업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화장품산업의 기반 조성 및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고, 그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기술적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화장품기업의 책무) ① 화장품기업은 화장품산업의 혁신성 강화 등을 통하여 화장품산업의 지속적인 발전 및 국가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화장품기업은 화장품 품질 향상을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정책에 적극 참여하고 제도개선에 협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화장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나. 검토의견

□ 제정안은 현재 「화장품법」 제33조²⁰⁾의 포괄적 산업지원 조항 외에 화장품산업 육성·지원을 위한 구체적인 법적 근거가 부족하므로 화장품산업 육성·지원 정책을 체계화·구체화하기 위한 법률을 제정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 다만, 제정안의 제1장(총칙)과 관련하여서는 다음 사항이 논의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 첫째, 안 제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는 ‘화장품산업’, ‘화장품기업’ 및 ‘혁신형 화장품기업’을 각각 정의하고 있는데,

이 법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면서 사용 빈도가 높고, 다른 용어를 기술하는 데 있어 토대가 되는 용어인 ‘화장품’의 의미를 우선 명확히 할 필요가 있으므로, ‘「화장품법」 제2조제1호²¹⁾에 따른 화장품’으로 이 법의 ‘화장품’을 정의한 다음, 안 제2조제1호 및 같은 조 제2호 마목 중 “「화장품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화장품”을 ‘화장품’으로 수정하는 방안이 논의될 필요가 있음.

□ 둘째, 안 제2조제2호라목에서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2에 따른 벤처기업”이라 규정하고 있는데,

20) 「화장품법」

제33조(화장품산업의 지원) 보건복지부장관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화장품산업의 진흥을 위한 기반조성 및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재원을 마련하고 기술개발, 조사·연구 사업, 해외 정보의 제공, 국제협력체계의 구축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21) 「화장품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화장품”이란 인체를 청결·미화하여 매력을 더하고 용모를 밝게 변화시키거나 피부·모발의 건강을 유지 또는 증진하기 위하여 인체에 바르고 문지르거나 뿌리는 등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사용되는 물품으로서 인체에 대한 작용이 경미한 것을 말한다. 다만, 「약사법」 제2조제4호의 의약품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2에서는 벤처기업의 요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조제1항에서 ‘벤처기업’을 정의하고 있으므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²²⁾

- 셋째, 이 법에 따른 ‘화장품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혁신형 화장품기업의 인증을 신청할 수 있으므로(안 제10조제1항),

화장품의 제조·판매에 사용되는 용기 또는 원료를 제조하거나 공급하는 기업과 화장품 제품 유통 또는 소매 판매를 주된 사업으로 하는 기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을 화장품기업의 유형으로 규정하고 있는 안 제2조제2호마목 및 바목은 어떤 요건·기준 등을 대통령령에 위임하는지가 보다 명확하게 드러나도록 구체화하여 예측 가능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 넷째, ‘혁신형 화장품기업’을 정의한 안 제2조제3호에서는 ‘연구개발 투자 규모’(가목) 외에 ‘수출 기준’(나목)을 그 요건으로 함께 규정하고 있어 제정안에 따라 혁신형 화장품기업에 제공되는 조세 감면이나 부담금 면제 특례 등의 우대조치가 세계무역기구(WTO)가 금지하는 수출보조금(Export Subsidy)에 해당하게 될 소지가 있는 점이 논의될 필요가 있음.

- 참고로, WTO의 ‘보조금 및 상계조치에 관한 협정’(Agreement on Subsidies and Countervailing Measures) 부록(Annex) I 에서는

22)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정의) ① “벤처기업”이란 제2조의2의 요건을 갖춘 기업을 말한다.

제2조의2(벤처기업의 요건) ① 벤처기업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각 호 생략)

금지되는 수출보조금의 예시로 ‘정부가 수출 실적에 따라 기업이나 산업에 직접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The provision by governments of direct subsidies to a firm or an industry contingent upon export performance)’을 규정하고 있는데,

산업통상부는 제정안에 따른 혁신형 화장품기업에 대한 우대 조치가 WTO 규범상 금지보조금(① 정부의 재정적 기여 존재, ② 부담금 면제 등 각종 혜택 존재, ③ 수출 실적에 따라 지급)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고 보았고,

이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는 국내 화장품기업 특성상 중소기업의 수출 비중²³⁾과 생산액 대비 수출 비율²⁴⁾이 매우 높은 상황에서 우수 기업을 발굴·지원하려면 수출 실적을 불가피하게 고려하여야 하는 상황으로, 제정안의 “수출”이라는 직접적 문구를 ‘해외진출 역량’으로 대체하거나 하위법령에 위임하는 방안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 다섯째, 안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는 “화장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제정안이 화장품산업 육성·지원에 관한 특별법적인 성격임을 감안할 때 이 법을 우선 적용하도록 하는 것이 법 제정의 취지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임.

따라서, 제정안이 다른 법률보다 우선하여 적용되도록 하는 특별법의 지위를 부여하거나, 제정안을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되도록 하더라도 다른 법률을 적용하는 것이 이 법에 따른 지원보다

23) 2024년 우리나라 화장품 수출 기업 9,257개사 중 중소기업은 8,987개사로 약 97.1%임(자료: 보건복지부).

24) (수출/생산 비율) ('20) 58.9% → ('21) 63.1% → ('22) 75.6% → ('23) 76.1% → ('24) 79.2%(자료: 보건복지부).

더 유리한 경우에는 그 법률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화장품 산업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이 규정된 제정안의 내용과 취지 등을 고려하여 제정안과 다른 법률과의 관계를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 예를 들어, 「의료기기산업법」에서는 의료기기산업의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사항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이 법을 적용하되,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보건의료기술 진흥법」과 「의료기기법」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고,²⁵⁾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서는 이 법이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된다는 점을 원칙으로 규정하되, 다른 법률을 적용하는 것이 이 법에 따른 지원을 받는 자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그 법률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²⁶⁾

25)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의료기기산업의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및 「의료기기법」에 따른다.

26)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이 법은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률을 적용하는 것이 이 법에 따른 지원을 받는 자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그 법률을 적용한다.

2. 화장품산업 육성 및 지원계획(안 제2장: 안 제6조부터 제9조까지)

가. 제정안의 내용

□ 제정안은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여금 5년마다 종합계획을 수립하게 하면서(안 제6조), 보건복지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에 대하여는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안 제7조),

종합계획·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및 혁신형 화장품기업의 인증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는 화장품산업 육성·지원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설치하며(안 제8조),

보건복지부장관이 종합계획·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추진하기 위하여 화장품산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조).

【제정안】 화장품산업 육성 및 지원계획(안 제2장)

제6조(화장품산업 육성·지원 종합계획)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화장품산업의 발전기반 조성 및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5년마다 화장품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화장품산업 육성을 위한 중장기 목표와 추진방향
2. 화장품산업 육성에 필요한 투자재원의 조달 및 활용계획
3. 화장품 연구의 기반 조성에 관한 지원 계획 및 연구·개발
4. 화장품산업 육성에 필요한 인력자원의 개발 및 효율적 활용계획
5. 화장품산업의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 지원계획
6. 혁신형 화장품기업 지원계획
7. 그 밖에 화장품산업 육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제정안】 화장품산업 육성 및 지원계획(안 제2장)

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 종합계획은 제8조에 따른 화장품산업 육성·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종합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확정·변경된 종합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종합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화장품산업 육성·지원 시행계획) ① 보건복지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매년 종합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 및 전년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매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시행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시행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및 제3항에 따른 추진 실적의 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화장품산업 육성·지원 위원회)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화장품산업 육성·지원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혁신형 화장품기업의 인증, 인증 취소 및 지위 승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화장품산업 육성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고,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이 전체

【제정안】 화장품산업 육성 및 지원계획(안 제2장)

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1. 당연직 위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공무원 중에서 소속기관의 장이 임명하는 사람
2. 위촉직 위원: 화장품산업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산업계·학계·연구기관 등에 종사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이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추천하는 위원을 각 2명씩 포함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심의 대상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위원의 가족(「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을 말한다)이 이해관계인인 경우

⑤ 해당 심의 대상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직무집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기피 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의결로 기피를 결정하여야 한다.

⑥ 위원은 제4항 또는 제5항의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해당 심의 대상 안건의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⑦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화장품산업 육성·지원 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위촉하는 자로 정한다.

⑧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를 두며, 간사는 보건복지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명한다.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화장품산업 실태조사)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종합계획과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추진하기 위하여 화장품산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그 밖의 관련 법인·단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를 요청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범위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나. 검토의견

□ 제정안은 종합계획(5년)·시행계획(매년)을 수립하도록 함으로써 화장품산업 육성·지원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정부의 정책 추진 방향 및 방안 등에 관한 산업계 등 이해관계자의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려는 취지로 보임.

□ 다만, 제정안의 제2장(화장품산업 육성 및 지원계획)과 관련하여서는 다음 사항이 논의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 첫째, 안 제6조제4항 전단에서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종합계획을 확정하도록 규정하면서 같은 항 후단에서는 종합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행정의 절차적 능률을 제고하기 위하여 종합계획에서 변경되는 사항이 경미한 경우에는 위원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참고로,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제3항²⁷⁾에서는 전략산업등의 육성·보호 기본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둘째, 안 제6조에서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종합계획을 수립한 경우 이를 국회에 보고하는 절차를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데,

27)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전략산업등 육성·보호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③ 기본계획은 산업통상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별 부문계획을 종합하여 수립하되, 제9조에 따른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확정한다. 기본계획을 변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국회가 화장품산업의 육성·지원을 위한 정부의 정책 추진계획과 성과 등이 실효적인지를 평가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장관이 종합계획을 수립하면 이를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절차를 추가하는 방안이 고려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참고로,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제4항²⁸⁾에서는 산업통상부장관이 전략산업등의 육성·보호 기본계획을 수립하면 이를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셋째, 안 제8조제1항에서는 위원회를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직제상 화장품산업의 육성·지원 및 기반구축에 관한 사무는 보건복지부 소관이고,²⁹⁾ 화장품제조업의 등록을 포함한 화장품의 안전에 관한 사무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관장하고 있으므로,³⁰⁾ 이 법의 제정 목적 및 취지를 효과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간의 정책 조정과 명확한 기능 분담이 요구되는 측면이 고려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이와 관련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는 K-뷰티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행정 역량을 결집하려면 화장품산업 발전기반 조성 및 국제경쟁력 강화를 특정 부처의 업무로 단일화하기 보다는 개별 부처의 전문성을

28)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전략산업등 육성·보호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이를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29)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7조(보건산업정책국)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2. 보건의료산업(화장품·의약품·의료기기 등 산업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육성·지원 및 기반구축에 관한 사항

30)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조(직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농수산물 및 그 가공품, 축산물 및 주류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건강기능식품·의약품·마약류·화장품·의약외품·의료기기 및 위생용품 등(이하 “식품·의약품등”이라 한다)의 안전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고려하여 기능을 분담하되, 여러 부처가 관계된 사안의 경우 국무조정실이 부처 간 협력과 갈등을 조정·협의하는 거버넌스 구축이 바람직하다는 측면을 고려할 때, 국무총리 소속의 화장품경쟁력 강화협의회를 설치하는 등의 내용으로 서영석의원이 대표발의한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5378호)을 참고하여 제정안을 심사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고,

행정안전부는 「정부조직법」에서 ‘자문기관’은 대통령령에 근거하여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고,³¹⁾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에서는 성격·기능이 유사한 자문위원회의 설치를 제한하면서 이를 설치하더라도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존속기한을 정하여 법령에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³²⁾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며,

중소벤처기업부는 제정안의 지원대상(화장품기업)에 중소·벤처기업이 포함되는 점을 고려할 때 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31) 「정부조직법」

제4조(부속기관의 설치) 행정기관에는 그 소관사무의 범위에서 필요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험연구기관·교육훈련기관·문화기관·의료기관·제조기관 및 자문기관 등을 둘 수 있다.

32)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중복 위원회의 설치 제한 등) ① 행정기관의 장은 그 기관 또는 관련 기관 내에 설치되어 있는 위원회와 성격과 기능이 중복되는 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행정기관의 장은 성격·기능이 유사하거나 관련이 있는 복수의 위원회를 하나의 위원회와 분과위원회, 전문위원회 등의 체계로 연계하여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③ 행정기관의 장은 불필요한 위원회가 설치되지 아니하도록 소관 정책에 관한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반영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통합하여 설치·운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의2(정책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① 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정책에 관한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반영하기 위하여 정책자문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행정기관의 장은 제7조에 따라 성격과 기능이 중복되거나 불필요한 위원회가 설치되지 아니하도록 위원회를 새로 설치하는 대신 정책자문위원회를 활용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책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위원회의 존속기한) ② 행정기관의 장은 자문위원회등을 설치할 경우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기한 내에서 존속기한을 정하여 법령에 명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존속기한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 넷째, 안 제8조제1항제1호에서는 위원회가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안 제6조제4항에서 종합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을 위원회의 심의 사항으로 규정한 반면, 안 제7조에서는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을 위원회의 심의 사항으로 규정하지 아니한 점을 고려하여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은 안 제8조제1항제1호에서 삭제하거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과 전년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안 제7조제2항)을 위원회에 제출하도록 수정하면서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의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을 위원회의 심의·조정 사항에 추가하는 방안 등이 논의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참고로,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제3항에서는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본계획을 확정하도록 하면서 같은 법 제6조제2항에서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매년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에 전년도 실행계획 이행실적 및 다음 연도 실행계획을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9조제1항제1호에서 ‘기본계획 및 실행계획의 수립·시행, 이행실적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을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의 심의 사항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음.³³⁾

33)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전략산업등 육성·보호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③ 기본계획은 산업통상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별 부문계획을 종합하여 수립하되, 제9조에 따른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확정한다. 기본계획을 변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6조(전략산업등 육성·보호 실행계획의 수립)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매년 제9조에 따른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에 전년도 실행계획 이행실적 및 다음 연도 실행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 ① 전략산업등의 육성 및 보호와 관련된 주요 정책 및 계획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기본계획 및 실행계획의 수립·시행, 이행실적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 다섯째, 위원회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위촉직 위원을 구성할 때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추천하는 위원을 각 2명씩 포함하도록 규정한 안 제8조제3항제2호는 중소벤처기업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각각 ‘중소기업·벤처기업³⁴⁾’과 ‘화장품의 안전³⁵⁾’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데,

안 제32조에서 정부가 중소기업뿐 아니라 ‘중견기업’에 대하여도 우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국내 화장품기업의 전체 매출액과 수출액에서 중견기업이 차지하는 비중 등을 감안할 때 중견기업에 관한 사무를 관장³⁶⁾하는 산업통상부장관에게도 위촉직 위원의 추천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국내 화장품산업 기업 매출액·수출액 >

구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매출액(억원)	187,427	179,115	189,590	222,001
대기업	51,274	39,557	36,862	37,696
중견기업	85,420	82,644	82,756	92,651
(비중)	(45.6%)	(46.1%)	(43.6%)	(41.7%)
중소기업	50,733	56,913	69,972	91,654
수출액(백만달러)	9,184	7,953	8,463	10,178
대기업	2,382	1,724	1,405	1,198
중견기업	1,676	1,402	1,383	1,703
(비중)	(18.2%)	(17.6%)	(16.3%)	(16.7%)
중소기업	4,873	4,432	5,286	6,815

자료: 한국보건산업진흥원

34) 「정부조직법」

제48조(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 정책의 기획·종합, 중소기업의 보호·육성, 창업·벤처기업의 지원, 대·중소기업 간 협력 및 소상공인에 대한 보호·지원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35)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조(직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농수산물 및 그 가공품, 축산물 및 주류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건강기능식품·의약품·마약류·화장품·의약외품·의료기기 및 위생용품 등(이하 “식품·의약품등”이라 한다)의 안전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36) 「정부조직법」

제41조(산업통상부)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상업·무역·공업·통상, 통상교섭 및 통상교섭에 관한 총괄·조정, 외국인 투자, 중견기업, 산업기술 연구개발정책, 원자력발전의 수출 및 자원산업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 여섯째, 위원회 위원의 ‘가족(「민법」 제779조³⁷⁾에 따른 가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심의 대상 안건의 이해관계인인 경우 해당 위원을 그 심의에서 제척하도록 규정한 안 제8조제4항제2호는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취지로 보이는데,

그 범위를 ‘친족(「민법」 제777조³⁸⁾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 이하 같다)’ 등으로 확대할 필요가 없는지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

- 참고로, 「의료기기산업법」 제8조제4항제2호³⁹⁾와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9조제1항제2호⁴⁰⁾ 등에서는 ‘가족’이 이해관계인인 위원의 제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제3호⁴¹⁾에서는 ‘가족관계에 있거나 그러한 관계에 있었던 사람’이 이해관계인인 위원을 제척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37) 「민법」

제779조(가족의 범위) ①다음의 자는 가족으로 한다.

1.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2.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 ② 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 한한다.

38) 「민법」

제777조(친족의 범위) 친족관계로 인한 법률상 효력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에 미친다.

1. 8촌 이내의 혈족
2. 4촌 이내의 인척
3. 배우자

39)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제8조(의료기기산업육성·지원위원회) ④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심의 대상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除斥)된다.

2. 위원의 가족(「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을 말한다)이 이해관계인인 경우

40)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9조(위원의 제척·기피 및 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은 업무의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2. 위원의 가족(「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을 말한다)이 이해관계인인 경우

41)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74조(위원의 제척·기피 및 회피) ①영상물등급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한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3. 위원과 가족관계에 있거나 그러한 관계에 있었던 사람이 신청한 사항

「군인사법」 제58조의3제1항제1호,⁴²⁾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8조의8제1항제2호,⁴³⁾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9조제1항제2호⁴⁴⁾ 등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사람’이 이해관계인인 위원이 제척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일곱째**, 안 제9조에서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종합계획·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추진하기 위하여 화장품산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화장품책임판매업자·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가 「화장품법」 제5조 제5항 및 제6항⁴⁵⁾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는 화장품의 생산·수입실적이나 제조에 사용된 원료의 목록 등이 안 제9조에 따른 실태조사에 활용될 수 있는 점을 감안하여 이를 상호 연계하는 방안이 고려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이와 관련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화장품책임판매업자·맞춤형 화장품판매업자로부터 화장품 생산·수입실적, 사용된 원료의 목록

42) 「군인사법」

제58조의3(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징계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심의대상자와 친족(「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43)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8조의8(분쟁조정협의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건의 조정에서 제척된다.

2. 위원이 해당 사건의 당사자와 「민법」에 따른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44)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9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2. 위원이 해당 사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45) 「화장품법」

제5조(영업자의 의무 등) ⑤ 화장품책임판매업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화장품의 생산실적 또는 수입실적, 화장품의 제조과정에 사용된 원료의 목록 등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원료의 목록에 관한 보고는 화장품의 유통·판매 전에 하여야 한다.

⑥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맞춤형화장품에 사용된 모든 원료의 목록을 매년 1회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등에 대한 보고를 받고 있고, 관련 통계는 국가승인통계(승인번호 145011)로서 매년 공표하고 있으므로, 안 제9조의 실태조사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 외에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계 부처가 수행하는 업무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고,

중소벤처기업부는 제정안의 지원대상에 중소기업·벤처기업이 포함되는 점을 고려할 때 화장품산업 실태조사의 실시 주체를 ‘보건복지부장관’에서 ‘정부’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3. 혁신형 화장품기업 인증 및 지원(안 제3장 및 부칙: 안 제10조부터 제20조까지 및 부칙)

가. 제정안의 내용

□ 제정안은 보건복지부장관이 혁신형 화장품기업으로 인증을 받고자 하는 화장품기업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유효기간 3년의 혁신형 화장품기업으로 인증하고 그 인증을 나타내는 표시(이하 “인증마크”라 한다)를 사용할 수 있게 하면서, 혁신형 화장품기업의 지위 승계, 인증 취소, 유형 구분 및 전담기관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안 제10조부터 제16조까지),

혁신형 화장품기업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우선 참여, 조세와 연구시설 건축에 관한 특례 및 각종 부담금의 면제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되, 연구시설 건축에 관한 특례와 각종 부담금의 면제에 관한 조항은 이 법 시행일부터 10년간 효력을 가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7조부터 제20조까지 및 안 부칙 제2조·제3조).

【제정안】 혁신형 화장품기업 인증 및 지원(안 제3장 및 부칙)
제10조(혁신형 화장품기업의 인증 등) ① 혁신형 화장품기업으로 인증받고자 하는 화장품기업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혁신형 화장품기업 인증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혁신형 화장품기업으로 인증할 수 있다. 이 경우 인증기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화장품산업 연구 인력 및 연구개발시설 등 인적·물적 투입자원의 우수성 2. 화장품산업 연구개발의 기획, 중장기 연구개발 투자계획 등 연구개발 활동의 우수성

【제정안】 혁신형 화장품기업 인증 및 지원(안 제3장 및 부칙)

3. 연구개발 성과의 기술적·경제적 우수성

4. 화장품산업 해외 진출 역량 및 성과의 우수성 등에 관한 사항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혁신형 화장품기업 인증을 받은 기업에 대하여 인증서를 교부하고 인증을 나타내는 표시(이하 “인증마크”라 한다)를 제작하여 혁신형 화장품기업이 사용하도록 할 수 있다.

④ 누구든지 제2항에 따른 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인증서 또는 인증마크를 제작·사용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인증을 사칭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제2항에 따른 인증의 방법 및 절차, 제3항에 따른 인증마크의 도안 및 표시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1조(지위의 승계) ① 혁신형 화장품기업의 지위를 승계받고자 하는 기업은 그 지위의 승계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위의 승계를 위한 신청 방법 및 절차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고려하여 지위의 승계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에 따른 신청대상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지위의 승계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1. 혁신형 화장품기업의 분할(혁신형 화장품기업과의 분할합병을 포함한다)이 있는 경우 화장품산업에 해당하는 사업 일체를 유지 또는 승계한 법인

2. 혁신형 화장품기업이 다른 화장품기업을 인수·합병하여 그 인수·합병 후 존속하거나 설립되는 법인이 혁신형 화장품기업의 지위를 승계받으려는 경우로서 혁신형 화장품기업의 사업 일체를 유지한 법인

3. 그 밖에 제10조에 따른 인증기준을 충족하고 있는 등 인증 목적의 달성이 가능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화장품기업

제12조(인증의 유효기간) ① 제10조제2항에 따른 인증의 유효기간은 인증을 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한다.

② 혁신형 화장품기업 인증을 받은 기업은 최초 인증 이후 3년마다 재평가를 통하여 인증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재평가의 기준 및 인증의 연장 신청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3조(인증의 취소)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0조제2항에 따라 혁신형 화장품기업으로 인증된 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심의를 거쳐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그

【제정안】 혁신형 화장품기업 인증 및 지원(안 제3장 및 부칙)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때
2. 인증기준을 충족하지 아니하게 된 때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제1호에 따라 인증이 취소된 화장품기업에 대하여는 취소일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재인증을 해서는 아니 된다.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제1호의 사유로 인증이 취소된 화장품기업에 대하여 제17조부터 제21조까지에 따라 제공한 각종 우대조치의 지원을 중단하여야 하고, 인증 시점부터 취소 시점까지 제공된 혜택을 반환하도록 조치할 수 있다.

④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제2호의 사유로 인증이 취소된 화장품기업에 대하여 제17조부터 제21조까지에 따라 제공한 각종 우대조치의 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인증 취소, 제3항과 제4항에 따른 우대조치 중단 및 혜택의 반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자료의 제공) ① 제10조에 따라 혁신형 화장품기업의 인증을 신청한 기업이나 혁신형 화장품기업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증 또는 인증 취소 등 그 업무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이에 따라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자료 요구의 범위,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5조(혁신형 화장품기업의 유형별 구분) 혁신형 화장품기업의 유형별 구분은 제2조제3호에서 정의된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기업의 연간 매출액 및 증가율
2.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의 비중 및 증가율
3. 매출액 대비 수출액의 비율 및 증가율
4. 그 밖에 기업의 규모와 역량을 판단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16조(혁신형 화장품기업 인증 전담기관 지정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0조제2항 및 제12조제2항에 따른 혁신형 화장품기업에 대한 인증 및 재평가, 제13조제1항에 따른 인증 취소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전담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전담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제정안】 혁신형 화장품기업 인증 및 지원(안 제3장 및 부칙)

제17조(국가연구개발사업 등 우대) ① 정부는 화장품 연구개발을 위한 국가 연구개발사업 등에 혁신형 화장품기업이 우선 참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우선 참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8조(조세에 관한 특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화장품산업을 지원·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혁신형 화장품기업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등의 조세 관련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세·소득세·취득세·등록면허세 및 재산세 등의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

제19조(연구시설 건축에 관한 특례) ① 혁신형 화장품기업은 연구시설(시제품 생산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속용도로 인정되는 시설을 포함한다)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지역(녹지지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은 제외한다) 중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지역에 건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고시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각종 부담금의 면제) 혁신형 화장품기업의 연구시설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부담금을 면제할 수 있다.

1.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개발부담금
2.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6조에 따른 교통유발부담금
3. 「산지관리법」 제19조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4. 「초지법」 제23조에 따른 대체초지조성비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제19조 및 제20조는 이 법 시행일부터 10년간 효력을 가진다.

제3조(유효기간 만료에 따른 특례) ① 제19조의 유효기간 만료 당시 연구시설 건축에 대하여 제19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한 경우에는 제19조 유효기간 만료 후에도 계속하여 제19조를 적용한다.

② 제20조의 유효기간 만료 당시 제20조에 따라 부담금 면제대상이 되는 연구시설에 대하여는 제20조의 유효기간 만료 후에도 계속하여 제20조를 적용한다.

나. 검토의견

- 「제약산업법」 및 「의료기기산업법」에서는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이 ‘혁신형 제약기업’과 ‘혁신형 의료기기기업’을 인증하고 이들에 대하여 각종 우대조치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⁴⁶⁾

제정안은 화장품산업에도 제약산업·의료기기산업과 유사한 ‘혁신형 화장품기업 인증제도’를 도입하고 각종 우대조치를 제공함으로써 화장품기업의 연구개발과 해외시장 진출 등을 촉진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 다만, 제정안의 제3장(혁신형 화장품기업 인증 및 지원)과 관련하여서는 다음 사항이 논의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 첫째, 안 제10조제2항 각 호에서는 화장품기업의 연구개발이나 해외 진출 역량 등 경영성과에 관한 계량적·재무적 지표를 중심으로 혁신형 화장품기업 인증기준을 규정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2016년 2월 법률 제14027호로 공포된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에 따라 동물실험을 실시한 화장품의 유통·판매가

46)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혁신형 제약기업”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으로서 제7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인증을 받은 제약기업을 말한다.

가. 신약 연구개발 등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투자를 하는 제약기업

나. 국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신약 연구개발 투자실적이 있거나 신약 연구개발을 수행하고 있는 외국계 제약기업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혁신형 의료기기기업”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으로서 제10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인증을 받은 의료기기기업을 말한다.

가. 의료기기의 연구개발 등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투자를 한 의료기기기업

나. 국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의료기기 연구개발 투자실적이 있거나 의료기기 연구개발을 수행하고 있는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인 의료기기기업

다. 제21조에 따라 지정된 혁신의료기기를 연구개발 및 생산하는 의료기기기업

원칙적으로 금지되었고,⁴⁷⁾ 유럽연합(EU)은 재활용·재사용이 가능한 포장재로 화장품 용기를 제조하도록 하는 ‘포장 및 포장 폐기물 규정(Packaging and Packaging Waste Regulation; PPWR)’을 채택하는 등 전통적인 재무적 성과 외에 환경·사회·지배구조(ESG) 요소가 화장품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는 측면이 있으므로,

「제약산업법」 제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4호⁴⁸⁾와 「의료기기산업법」 제10조제2항제4호⁴⁹⁾에 따른 혁신형 제약·의료기기

47) 「화장품법」

제15조의2(동물실험을 실시한 화장품 등의 유통판매 금지) ① 화장품책임판매업자 및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는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동물실험(이하 이 조에서 “동물실험”이라 한다)을 실시한 화장품 또는 동물실험을 실시한 화장품 원료를 사용하여 제조(위탁제조를 포함한다) 또는 수입한 화장품을 유통·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8조제2항의 보존제, 색소, 자외선차단제 등 특별히 사용상의 제한이 필요한 원료에 대하여 그 사용 기준을 지정하거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국민보건상 위해 우려가 제기되는 화장품 원료 등에 대한 위해평가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동물대체시험법(동물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실험방법 및 부득이하게 동물을 사용하더라도 그 사용되는 동물의 개체 수를 감소하거나 고통을 경감시킬 수 있는 실험방법으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동물실험이 필요한 경우
3. 화장품 수출을 위하여 수출 상대국의 법령에 따라 동물실험이 필요한 경우
4. 수입하려는 상대국의 법령에 따라 제품 개발에 동물실험이 필요한 경우
5. 다른 법령에 따라 동물실험을 실시하여 개발된 원료를 화장품의 제조 등에 사용하는 경우
6. 그 밖에 동물실험을 대체할 수 있는 실험을 실시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경우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동물대체시험법을 개발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화장품책임판매업자 등이 동물대체시험법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48)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7조(혁신형 제약기업의 인증)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인증할 수 있다. 이 경우 인증에 관하여 필요한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2조(혁신형 제약기업의 인증기준)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인증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구 인력, 연구개발 투자실적 및 생산시설 등 인적·물적 투입 자원의 우수성
2. 연구개발의 기획, 신약개발 관련 비임상시험(非臨床試驗)·임상시험의 수행, 중장기 연구개발 투자계획 등 신약 연구개발 활동의 우수성
3. 의약품 특허 및 기술이전, 해외시장진출 역량, 우수한 의약품 개발·보급 등 기술적·경제적 성과의 우수성과 국민보건 향상에 대한 기여도
4. 의약품 등의 유통체계와 판매질서 준수 등 기업의 사회적 책임 및 윤리성
5.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외부감사의 대상 여부
6.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증기준으로서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49)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제10조(혁신형 의료기기기업의 인증)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혁신형 의료기기기업으로 인증할 수 있다. 이 경우 인증기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의료기기 분야의 연구인력 확보, 연구개발을 위한 생산시설 구비 등 인적·물적 투입 자원의 우수성
2. 의료기기 연구개발의 기획, 중장기 연구개발 투자계획 등 연구개발 활동의 우수성
3. 의료기기 연구개발 성과의 기술적·경제적 우수성 및 국민보건 향상에 대한 기여도
4. 의료기기의 유통체계와 판매질서 준수 등 기업의 사회적 책임 및 윤리성

기업의 인증기준 등을 고려하여 ‘화장품 등의 유통체계와 판매질서 준수 등 기업의 사회적 책임 및 윤리성’을 혁신형 화장품기업 인증기준에 추가하는 방안이 논의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둘째, 안 제13조제2항에서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혁신형 화장품기업 인증을 받아 그 인증이 취소된 화장품기업에 대하여는 취소일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재인증’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재인증’은 기존의 인증이 유효한 가운데 그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안 제12조제2항에 따른 ‘재평가를 통한 인증의 연장’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될 소지가 있으므로, 「제약산업법」 제9조제2항⁵⁰⁾ 및 「의료기기산업법」 제13조제2항⁵¹⁾ 등을 참고하여 안 제13조제2항 중 “재인증을 해서는”을 ‘인증을 하여서는’으로 수정하는 방안이 논의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 셋째, 안 제13조제3항 및 제4항에서는 혁신형 화장품기업 인증이 취소된 화장품기업에 대하여 “제17조부터 제21조까지에 따라 제공한 각종 우대조치의 지원”이 중단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정부가 화장품산업의 발전을 위한 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일반적인 근거 조항인 안 제21조는 혁신형 화장품기업에 대한 우대조치가 아니므로 ‘제17조부터 제20조까지에 따라 제공한 각종 우대조치의 지원’이 중단되도록

50)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9조(인증의 취소)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제1호에 따라 인증이 취소된 제약기업에 대하여 취소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인증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51)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제13조(인증의 취소)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제1호에 따라 인증이 취소된 의료기기기업에 대하여 취소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인증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안 제13조제3항 및 제4항이 각각 수정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 넷째, 안 제15조는 기업의 연간 매출액·증가율, 매출액 대비 연구 개발비·수출액의 비중·증가율 등을 고려하여 혁신형 화장품기업의 유형을 구분하려는 것인데,

혁신형 제약·의료기기기업의 유형을 구분하고, 각 유형별로 그 지원 방법·규모 등을 서로 다르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한 「제약산업법」 및 「의료기기산업법」⁵²⁾과 달리 제정안에서는 혁신형 화장품기업의 유형별로 그 지원 방법·규모 등을 차등화할 근거를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여 혁신형 화장품기업의 유형을 구분할 실익이 있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므로, 안 제15조를 삭제하거나 혁신형 화장품기업의 유형별로 그 지원 방법·규모 등을 서로 다르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논의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생각됨.

- 다섯째, 안 제16조는 보건복지부장관이 혁신형 화장품기업의 인증·재인증 및 인증 취소 업무를 수행하는 전담기관을 지정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인데, 전담기관 지정 요건에 관하여는 규정하지 아니하고 있음.

혁신형 화장품기업 인증이 각종 우대조치의 제공과 결부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공정성·전문성 등을 고려한 전담기관 지정 요건이 법률에 규정될 필요가 있으므로, 전담기관이 갖추어야 하는 요건의

52)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2조(혁신형 제약기업의 유형별 구분) ① 혁신형 제약기업의 유형별 구분은 제2조제3호에서 정의된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혁신형 제약기업의 유형별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원 방법·규모 등을 달리 할 수 있다.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제15조(혁신형 의료기기기업의 유형별 구분) ① 혁신형 의료기기기업의 유형별 구분은 제2조제3호에서 정의된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혁신형 의료기기기업의 유형별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원 방법·규모 등을 달리할 수 있다.

대강을 우선 법률로 정하고 구체적인 기준을 하위법령에서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는 방안이 논의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이와 관련하여 기획예산처는 혁신형 화장품기업의 인증 방법·절차와 그 인증·재인증 및 인증 취소 업무를 수행하는 전담기관 지정 요건 등이 구체화되지 아니한 상황에서 전담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건복지부장관이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고 규정한 안 제16조제2항은 시기상조인 측면이 있어 삭제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 여섯째, 안 제17조는 화장품 연구개발을 위한 국가연구개발사업에 혁신형 화장품기업이 우선 참여하게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인데, 「국가연구개발혁신법」과의 관계를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안 제5조에서는 화장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률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고, 종전에는 중앙행정기관마다 서로 달랐던 국가연구개발사업 운영체계를 통합하기 위하여⁵³⁾ 2020년 6월 법률 제17343호로 제정·공포된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서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에 관하여는 이 법(「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 우선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⁵⁴⁾

53) 법률 제17343호 「국가연구개발혁신법」 <2020. 6. 9. 제정 2021. 1. 1. 시행>

◇ 제정이유

현재 중앙행정기관별로 다르게 운용되고 있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이 통합적·체계적으로 운영될 수 있게 하고,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과정 전반의 비효율과 불필요한 부담을 제거함과 동시에 자율적이고 책임 있는 연구개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범부처 공통규범의 제정이 필요한 상황인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에 대한 범부처 공통규범으로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혁신에 관한 내용을 포함한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국가연구개발 체계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54)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국가연구개발사업 중 다른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된 기관의 기본사업(정관에 따른 설립목적에 달성하기 위하여 정부가 직접 출연한 예산으로 수행하는 연구개발사업을 말한다)의 경우에 제9조부터 제12조까지, 제14조 및 제1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다른 법률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법률을 적용한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9조제4항⁵⁵⁾은 연구개발과제와 이를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을 선정할 때 ‘공모’를 원칙으로 하되, 경제 여건 악화 등 사회·경제적으로 긴급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하여 정책적으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이 필요한 경우 등에는 ‘지정 등 공모 외의 방법’으로 연구개발과제와 이를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을 선정할 수 있는 예외를 규정하고 있는바, 법 적용의 우선순위 및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통합적·체계적 운영을 위한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의 취지 등을 고려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 이와 관련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중앙행정기관별로 다르게 운영되던 국가연구개발사업 규정을 통합하고 체계화한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되도록 한 취지를 고려할 때 개별 법률에 그 적용 예외를 인정하게 될 경우 연구행정의 부담이 심화될 수 있으므로 안 제17조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 일곱째, 안 제18조에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화장품산업을 지원·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혁신형 화장품기업에 대하여 각종 조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조세의 감면 등 특례의 구체적인 사항은 「조세특례제한법」이나

55)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9조(예고 및 공모 등)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공모를 통하여 연구개발과제와 이를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을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 등 공모 외의 방법으로 연구개발과제와 이를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을 선정할 수 있다.

1. 국가안보 또는 사회·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연구개발과제인 경우
2. 정부가 국제기구 또는 외국의 정부·기관·단체와 체결한 협정·조약 등에 따라 연구개발과제와 연구개발기관을 특정한 경우
3. 법령에 따라 연구개발기관이 지정된 경우
4. 재난·재해, 경제여건 악화 등 사회적·경제적으로 긴급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하여 정책적으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이 필요한 경우
5.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기관이 한정되어 공모를 진행할 실익이 없는 경우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조세 관련 법률에서만 정할 수 있으므로,⁵⁶⁾ 조세 관련 법률이 함께 개정되지 아니하면 제정안만으로는 혁신형 화장품기업에 대한 조세 감면의 특례가 부여될 수 없는 점이 고려될 필요가 있음.

- 이와 관련하여 재정경제부는 조세특례 신설은 「조세특례제한법」 등 일부 법률로써만 가능하고, 주기적 평가를 거쳐 비과세나 감면 등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도록 한 「조세특례제한법」의 취지에 상충되는 점이 고려될 필요가 있으며,⁵⁷⁾ 개별법에 조세특례에 관한 사항이 없더라도 필요한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의 개정으로 세제지원이 가능하게 되므로 개별법에 조세특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할 실익이 없다는 입장이고,

행정안전부는 지방세 특례규정 신설 등 감면 여부는 지방세 관계법에서만 규정 가능한 사항이므로, 선언적 의미로 볼 수 있는 안 제18조의 지방세 특례규정은 삭제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 여덟째, 안 제19조는 혁신형 화장품기업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제1항⁵⁸⁾에 따른 용도지역별 건축물 건축 제한에도

56) 「조세특례제한법」

제3조(조세특례의 제한) ①이 법, 「국세기본법」 및 조약과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조세특례를 정할 수 없다. (각 호 생략)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조(지방세 특례의 제한) ① 이 법, 「지방세기본법」, 「지방세징수법」, 「지방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및 조약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지방세법」에서 정한 일반과세에 대한 지방세 특례를 정할 수 없다.

57) 「조세특례제한법」

제142조(조세특례의 사전·사후관리) ⑤ 재정경제부장관은 주요 조세특례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연도에 적용기한이 종료되는 사항(지원대상의 소멸로 조세특례의 폐지가 명백한 사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제외한다)으로서 연간 조세특례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금액 이상인 조세특례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전문적인 조사·연구기관이 목표달성도, 경제적 효과, 소득재분배효과, 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에 대해 평가한 결과를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5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용도지역의 지정) ①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불구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지역에 연구시설을 건축할 수 있는 특례를 부여하려는 것인데,

‘도시·군계획’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관할 구역에서 수립되는 다른 법률에 따른 토지의 이용·개발에 관한 계획의 ‘기본’이 되는 공간구조 및 발전방향에 대한 계획으로서,⁵⁹⁾

안 제19조에 따른 특례가 국토의 계획적·체계적인 이용을 통한 난개발 방지와 환경친화적인 국토이용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제정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목적과 취지⁶⁰⁾에 부합하는지를 논의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1. 도시지역: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로 구분하여 지정한다.
 - 가. 주거지역: 거주자의 안녕과 건전한 생활환경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
 - 나. 상업지역: 상업이나 그 밖의 업무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 다. 공업지역: 공업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 라. 녹지지역: 자연환경·농지 및 산림의 보호, 보건위생, 보안과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녹지의 보전이 필요한 지역
 2. 관리지역: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로 구분하여 지정한다.
 - 가. 보전관리지역: 자연환경 보호, 산림 보호, 수질오염 방지, 녹지공간 확보 및 생태계 보전 등을 위하여 보전이 필요하나, 주변 용도지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기가 곤란한 지역
 - 나. 생산관리지역: 농업·임업·어업 생산 등을 위하여 관리가 필요하나, 주변 용도지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농림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기가 곤란한 지역
 - 다. 계획관리지역: 도시지역으로의 편입이 예상되는 지역이나 자연환경을 고려하여 제한적인 이용·개발을 하려는 지역으로서 계획적·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지역
 3. 농림지역
 4. 자연환경보전지역
 - ②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각 호 및 같은 항 각 호 각 목의 용도지역을 도시·군관리계획결정으로 다시 세분하여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 제76조(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제한 등)** ① 제36조에 따라 지정된 용도지역에서의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도시·군계획”이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광역시의 관할 구역에 있는 군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관할 구역에 대하여 수립하는 공간구조와 발전방향에 대한 계획으로서 도시·군기본계획과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구분한다.
4. “도시·군관리계획”이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개발·정비 및 보전을 위하여 수립하는 토지 이용, 교통, 환경, 경관, 안전, 산업, 정보통신, 보건, 복지, 안보, 문화 등에 관한 다음 각 목의 계획을 말한다.
 - 가. 용도지역·용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

제4조(국가계획, 광역도시계획 및 도시·군계획의 관계 등) ① 도시·군계획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관할 구역에서 수립되는 다른 법률에 따른 토지의 이용·개발 및 보전에 관한 계획의 기본이 된다.

60) 법률 제6655호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2002. 2. 4. 제정, 2003. 1. 1. 시행>

◇ 제정이유

중전에는 국토를 도시지역과 비도시지역으로 구분하여 도시지역에는 도시계획법, 비도시지역에는 국토이용관리법으로 이원화하여 운용하였으나, 국토의 난개발(亂開發) 문제가 대두됨에 따라 2003년 1월 1일부터는 도시계획법과 국토이용관리법을 통합하여 비도시지역에도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기법을 도입할 수 있도록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을 제정함으로써 국토의 계획적·체계적인 이용을 통한 난개발의 방지와 환경친화적인 국토이용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임.

- 이와 관련하여 국토교통부는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등을 제한함으로써 토지를 경제적·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공공복리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서로 중복되지 아니하게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되는 용도지역별 건축 제한의 예외를 규정할 경우 난개발이나 도시경관·환경 저해 및 기반시설 부족 등의 부작용이 우려되므로 안 제19조는 삭제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 아홉째, 안 제20조는 혁신형 화장품기업의 연구시설에 대하여는 개발부담금,⁶¹⁾ 교통유발부담금,⁶²⁾ 대체산림자원조성비⁶³⁾ 및 대체초지 조성비⁶⁴⁾ 등 4종의 부담금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인데,

부담금 면제에 관하여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각 부담금 소관 부처 등의 입장이 고려될 필요가 있음.

61)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3조(개발이익의 환수) 시장·군수·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에서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이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발부담금으로 징수하여야 한다.

62)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6조(교통유발부담금의 부과·징수) ① 시장은 도시교통정비지역에서 교통혼잡의 원인이 되는 시설물의 소유자로부터 매년 교통유발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63) 「산지관리법」

제19조(대체산림자원조성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산지전용과 산지일시사용에 따른 대체산림자원 조성에 드는 비용(이하 “대체산림자원조성비”라 한다)을 미리 내야 한다.

1. 제14조에 따라 산지전용허가를 받으려는 자
2. 제15조의2제1항에 따라 산지일시사용허가를 받으려는 자(「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광해방지사업을 하려는 자는 제외한다)
3. 다른 법률에 따라 산지전용허가 또는 산지일시사용허가가 의제되거나 배제되는 행정처분을 받으려는 자

64) 「초지법」

제23조(초지의 전용 등) ⑧ 대체초지조성비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하며,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신고 또는 협의(다른 법률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 또는 협의를 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하고 초지의 전용을 하려는 자는 대체초지조성비를 「축산법」 제43조에 따른 축산발전기금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제5호부터 제8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체초지조성비를 감면할 수 있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산업시설을 위하여 전용하는 경우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용 또는 공공용의 목적으로 전용하는 경우
3. 농업·축산업·임업 및 수산업에 필요한 용지로 전용하는 경우
4.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47조에 따라 시행승인을 받은 개발사업 중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1호의 등록 체육시설업에 속하는 골프장업의 시설에 필요한 용지로 전용하는 경우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전용의 경우

- 기획예산처는 혁신형 화장품기업의 연구시설에 대한 부담금 면제에 관한 사항이 규정된 안 제20조는 부담금 운용의 공정성·투명성 및 체계적 관리를 위한 「부담금관리 기본법」의 취지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측면이 있으므로, 부담금별 소관부처가 부담금 부과 목적과 취지, 타 지역 및 사업과의 형평성, 면제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각 근거법령에 부담금 면제에 관한 사항을 개별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 국토교통부는 부담금 제도의 관리 일원화 및 체계 유지 등을 위한 「부담금관리 기본법」 제5조(부담금 부과의 원칙)⁶⁵⁾에 따라 개별 부담금의 감면에 관한 사항은 그 부담금 부과의 근거가 되는 개별법령에서 정하는 것이 타당하고,

65) 「부담금관리 기본법」

- 제5조(부담금 부과의 원칙)** ① 부담금은 설치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공정성 및 투명성이 확보되도록 부과되어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하나의 부과대상에 이중으로 부과되어서는 아니 된다.
- ② 부과권자가 부담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부담금의 납부의무자에게 미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려야 한다.
1. 부담금 납부의무자
 2. 부담금 부과의 법적 근거, 납부금액, 산출근거, 납부방법 및 미납 시의 조치사항
 3. 부담금의 감면 요건 및 방법
 4. 부담금의 용도
 5. 제2호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뜻과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방법
 6. 의견제출기관의 명칭과 주소
 7. 의견제출 기한
 8. 그 밖에 부담금의 부과 및 납부에 필요한 사항
- ③ 부과권자는 제2항제5호에 따라 부담금의 납부의무자가 제출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그 의견을 반영하여야 한다.
- ④ 부과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통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福利)를 위하여 긴급하게 처분할 필요가 있는 경우. 다만, 해당 법령에서 정한 경우만 해당한다.
 2. 해당 처분의 성질상 의견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3. 해당 법령에서 부담금의 부과기준일, 부과기간 및 납부기한 등이 정하여져 있고, 제2항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부담금을 부과하는 경우. 다만, 납부의무자에게 최초로 부과하는 경우와 부과요율 인상, 부과대상 변경 등 부담금의 부과요건이 변경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 ⑤ 부담금의 부과, 감면, 납부방법 및 환급 절차에 관하여는 해당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정하되, 현금,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안 제20조제1호의 개발부담금 감면은 적정한 개발이익의 환수 및 배분이라는 제도의 정책목적과 개발부담금의 준조세적 성격을 고려할 때 감면대상을 필요최소한으로 한정하고, 형평성 원칙을 엄격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으며, 개별법상의 감면요구를 전부 수용할 경우 지역균형사업에 투입할 세외수입이 감소할 우려가 있다는 입장임.

또한, 안 제20조제2호의 교통유발부담금 면제는 자발적으로 교통량 감축활동을 이행할 경우 최대 90% 이상의 감면이 가능하므로 특정 시설에 대한 특혜성 면제가 감축활동에 성실히 참여한 소유자와의 형평성 문제를 야기할 수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 **농림축산식품부**는 대체초지조성비의 면제에 관한 사항이 규정된 안 제20조제4호와 관련하여 초지 전용에 따른 대체초지의 조성을 위하여 원인자에게 부과하는 부담금인 대체초지조성비는 축산발전기금의 재원으로서 초지의 현황 및 보전 필요성 등을 고려할 때, 그 감면 대상 확대를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4. 연구개발(안 제4장: 안 제21조부터 제24조까지)

가. 제정안의 내용

□ 제정안은 정부가 화장품산업의 발전을 위한 연구개발사업을 관련 기관 및 단체가 수행하게 하는 데 필요한 비용과 화장품·원료의 안전성·기능성 등 과학적 분석에 관한 시험·평가 및 관련 연구를 수행하려는 자에 대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안 제21조 및 제22조),

정부가 화장품산업 연구개발의 효율적 촉진을 위하여 혁신형 화장품 기업의 연구개발 관련 정보를 수집·조사하여 이를 체계적·종합적으로 관리·보급하도록 하면서 연구개발 관련 정보를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며(안 제23조),

정부가 화장품산업의 육성 또는 화장품 연구개발의 촉진에 기여한 기업 또는 개인을 선정하여 포상하고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24조).

【제정안】 연구개발(안 제4장)

제21조(연구개발사업 추진 및 지원) ① 정부는 화장품 품질평가 기반구축, 친환경 화장품 원료·제품 생산기술·생산방법의 개발, 그 밖에 화장품산업의 발전을 위한 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관련 기관 및 단체로 하여금 수행하게 할 수 있고, 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22조(시험·평가 및 연구 지원) ① 정부는 화장품산업의 연구개발 및 해외시장 진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화장품 또는 원료의 안전성·기능성 및 피부 특성 등 과학적 분석에 관한 시험·평가 및 관련 연구를 수행하려는 자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에 관한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정안】 연구개발(안 제4장)

제23조(연구개발 정보의 수집과 보급) ① 정부는 화장품산업 연구개발을 효율적으로 촉진하기 위하여 국내외 연구개발 동향, 시장동향 등 혁신형 화장품기업의 연구개발 관련 정보를 수집·조사하여 이를 체계적·종합적으로 관리·보급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의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혁신형 화장품기업의 연구개발 관련 정보를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혁신형 화장품기업의 연구개발 관련 정보를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기관의 지정 요건·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24조(화장품기업 등에 대한 포상) ① 정부는 화장품산업의 육성 또는 화장품 연구개발의 촉진에 기여한 기업 또는 개인을 선정하여 포상하고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나. 검토의견

□ 제정안은 정부가 화장품산업의 발전을 위한 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규정하면서 혁신형 화장품기업의 연구개발 관련 정보를 체계적·종합적으로 관리·보급하도록 함으로써 화장품의 기능과 안전성 등을 향상하기 위한 연구개발(R&D)을 활성화하고 그 성과가 화장품산업 전반으로 확산하게 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 참고로,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2025년 12월 발간한 『2025 바이오 헬스산업 통계집』에 따르면,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비중으로 산출되는 우리나라 화장품기업의 ‘연구개발집중도’는 약 1.4%인 것으로 나타남.

< 우리나라 화장품기업의 연구개발집중도 >

(단위: 억원, %)

구분	2020	2021	2022	2023	2024
매출액(A)	172,543	187,427	179,115	189,590	222,001
대기업	45,946	51,274	39,557	36,862	37,696
중견기업	77,391	85,420	82,644	82,756	92,651
중소기업	49,206	50,733	56,913	69,972	91,654
연구개발비(B)	2,526	2,765	2,832	2,942	3,082
대기업	374	374	406	500	450
중견기업	1,310	1,485	1,418	1,476	1,528
중소기업	842	906	1,009	966	1,103
연구개발집중도(B/A)	1.5	1.5	1.6	1.6	1.4
대기업	0.8	0.7	1.0	1.4	1.2
중견기업	1.7	1.7	1.7	1.8	1.6
중소기업	1.7	1.8	1.8	1.4	1.2

자료: 한국보건산업진흥원

□ 다만, 제정안의 제4장(연구개발)과 관련하여서는 다음 사항이 논의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 첫째,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제5조에서는 정부가 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도록 하면서 보건복지부장관이 국·공립 연구기관, 학교 또는 기업부설연구소 등과 협약을 맺어 연구하게 하고 그 기관·단체 등에 출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⁶⁶⁾

66)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제5조(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사업의 추진) ① 정부는 기본계획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사업(이하 “연구개발사업”이라 한다)을 수행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연구개발사업으로 연도별·분야별 연구과제를 선정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이나 단체 등과 협약을 맺어 연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4호의 기관 중 법인이 아닌 기관에 대하여는 그 기관이 속한 법인의 대표와 협약을 맺을 수 있다.

1. 국·공립 연구기관

같은 법 제2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라 ‘화장품의 개발 및 성능 향상에 관련되는 기술’도 이 법에 따른 ‘보건의료기술’에 해당하여⁶⁷⁾ 이에 대한 국가연구개발사업(R&D)의 추진을 위한 법적 근거가 이미 마련되어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안 제21조는 이를 규정할 실익이 크지 아니한 측면이 고려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 둘째, 안 제22조제1항에서는 화장품 또는 원료의 안전성·기능성 및 피부 특성 등 과학적 분석에 관한 시험·평가 및 관련 연구를 수행하려는 자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주체로 ‘정부’를 규정하고 있지만, 같은 조 제2항에서는 그 지원에 관한 세부사항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지원 주체가 보건복지부장관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면 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임.

2.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3.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부설연구소
5. 「민법」이나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인 연구기관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건의료기술 분야의 연구기관 또는 단체
- ③ 제2항에 따른 연구에 필요한 비용은 정부 또는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이나 기업의 기술개발비로 충당한다.
-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제2항에 따른 연구를 수행하는 기관이나 단체 등에 출연금을 지급할 수 있다.
-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연구과제를 선정하여 협약을 맺거나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출연금을 지급할 때 특정 기관 또는 단체 등에 편중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⑥ 제2항에 따른 연구과제의 선정 방법 및 협약의 체결 방법과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출연금의 지급·사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7)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건의료기술”이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나. 의약품·의료기기·식품·화장품·한약 등의 개발 및 성능 향상에 관련되는 기술
- ② 보건의료기술의 구체적인 분야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2조(보건의료기술) 「보건의료기술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항에 따른 보건의료기술의 구체적인 범위는 별표 1과 같다.

[별표 1] 보건의료기술의 범위(제2조 관련)

분 야	보건의료기술에 해당하는 기술
8. 화장품	가. 화장품 제조기술 나. 화장품 신소재 발굴기술 다. 화장품의 기능성·안전성 평가기술

- 한편 안 제22조제1항과 관련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화장품법」 제4조의2제3항⁶⁸⁾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화장품 원료 안전성 자료의 제공 등 필요한 행정적·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된 점을 고려하여 ‘화장품 또는 원료의 안전’과 관련된 지원 업무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사항임을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 셋째, 안 제23조제1항에서는 정부가 수집·조사·관리·보급하여야 하는 대상으로 ‘혁신형 화장품기업의 연구개발 관련 정보’만을 규정하고 있는데,

혁신형 화장품기업이 아닌 주체가 수행한 연구개발 관련 정보의 경우에도 수집·조사·관리·보급이 화장품산업 육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하여 안 제23조제1항 및 제2항 중 “혁신형 화장품 기업”을 각각 ‘화장품기업’으로 수정하는 방안을 논의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참고로, 「제약산업법」에서는 수집·조사·관리·보급하여야 하는 연구개발 관련 정보를 혁신형 제약기업이 수행한 연구개발에 한정하지 아니하는 대신 “국내외 신약 연구개발에 관한 정보”로 규정하고 있음.⁶⁹⁾

68) 법률 제21032호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

제4조의2(화장품 안전성 평가)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화장품책임판매업자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인 경우 제1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원활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화장품 안전성 평가 자료 작성 방법에 대한 지도·교육, 원료 안전성 자료의 제공 등 필요한 행정적·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2025. 12. 30. 본조신설, 2028. 1. 1. 시행]

69)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9조(연구개발정보의 수집과 보급)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약산업 연구개발을 효율적으로 촉진하기 위하여 국내외 연구개발 동향, 인공지능 등 신약개발 관련 기술 동향, 시장 동향 등 국내외 신약 연구개발에 관한 정보를 수집·조사하여 이를 체계적·종합적으로 관리·보급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의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신약연구개발 관련 정보를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 넷째, 안 제23조제2항에서는 보건복지부장관이 혁신형 화장품기업의 연구개발 관련 정보를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안 제23조제2항의 취지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 관련 정보의 수집·조사·관리·보급 업무 중 ‘관리’ 업무만을 해당 기관이 수행하도록 하려는 것이 아니라 ‘수집·조사·보급’ 업무까지를 담당하게 하려는 것이라면 그 기관이 수행하여야 하는 업무의 범위가 명확히 규정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이며,

보건복지부장관이 혁신형 화장품기업의 연구개발 관련 정보를 전문적으로 관리하도록 지정한 기관에 대하여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에 관하여는 제정안에 따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그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할 것인지를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5. 화장품산업 기반조성(안 제5장: 안 제25조부터 제32조까지)

가. 제정안의 내용

□ 제정안은 정부가 화장품산업을 육성하는 데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안 제25조), 화장품 원료·용기 산업 육성(안 제27조), 유통구조 개선(안 제28조), 해외시장 진출(안 제29조) 및 국제협력(안 제30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화장품산업 종합센터’를 설치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기관 또는 단체를 ‘화장품산업 종합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면서(안 제26조), 화장품산업 육성·지원에 필요한 각종 자료나 정보를 효율성으로 관리·제공하기 위하여 ‘화장품산업통합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게 하며(안 제31조),

정부가 연구개발·시험·평가, 화장품 원료·용기 산업 및 해외시장 진출 지원과 관련하여 중소·중견기업자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2조).

【제정안】 화장품산업 기반조성(안 제5장)

제25조(전문인력 양성) ① 정부는 화장품산업의 육성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양성과 자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대학·연구소 등 적절한 인력과 시설 등을 갖춘 기관을 화장품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관리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2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지정권자는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인력 양성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정안】 화장품산업 기반조성(안 제5장)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기준에 3개월 이상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사람을 이수한 것으로 처리한 경우
- ⑤ 제2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기준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6조(화장품산업 종합지원센터)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화장품산업의 육성과 화장품기업의 시장 진출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화장품산업 종합센터를 설치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기관 또는 단체를 화장품산업 종합지원센터로 지정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1. 화장품산업 관련 정부·공공기관의 지원사업 연계
2.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고 있는 화장품 관련 시설·장비 등의 연계·활용 지원
3. 화장품시장 진출 관련 화장품 원료개발, 제품화 등 지원 사업
4. 국내외 화장품 시장 진출 지원 및 관련 애로사항의 발굴·해소에 관한 사업
5. 국내 화장품산업 홍보·체험 거점의 조성 및 운영 지원
6. 그 밖에 화장품산업을 육성·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화장품산업 종합지원센터로 지정받은 기관의 장은 매년 사업계획 및 예산·결산에 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고, 사업실적을 정기적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③ 국가는 제1항에 따른 화장품산업 종합지원센터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화장품산업 종합지원센터의 지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7조(화장품 원료·용기 산업의 육성 및 지원) ① 정부는 화장품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원료·용기 산업의 기반을 강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그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화장품 원료·용기 산업 관련 연구개발 및 사업화 지원
2. 화장품 원료·용기 산업의 국산화 촉진 및 품질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
3. 화장품 원료·용기 산업 관련 기업과 화장품 제조업자 및 책임판매업자 간 협력체계 구축 지원
4. 그 밖에 원료·용기 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28조(유통구조 개선 및 판로 지원) 정부는 화장품 제품 및 관련 서비스의

【제정안】 화장품산업 기반조성(안 제5장)

유통구조를 개선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물류시설의 확충
2. 유통 전문기업의 역량 강화
3. 중소 화장품기업의 공동 판로 개척을 위한 온·오프라인 플랫폼 구축 및 운영
4. 그 밖에 화장품 유통체계 발전을 위한 사업

제29조(해외시장 진출 지원) 정부는 화장품산업의 수출 경쟁력을 높이고 해외시장 진출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화장품산업 관련 정보·기술·인력의 국제교류
2. 해외 물류·유통 인프라 및 네트워크 구축 지원
3. 화장품산업 관련 해외시장 개척·홍보 활동 지원
4. 해외 전시회 및 박람회 참가 지원
5. 화장품 해외 판매 지원 시설 설치·운영
6. 화장품산업 수출 관련 정보 제공 및 컨설팅 등의 지원
7. 화장품산업 수출 관련 기관·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
8. 국가별 수출 관련 규제 대응 인허가 지원
9. 화장품 제품·원료의 허가·등록에 관한 국가 간 상호 인정 등을 위한 협력 추진
10. 「화장품법」 제30조에 따른 수출용 제품에 대한 해외 안전성 평가 정보 제공 및 컨설팅 등의 지원
11. 전자상거래 입점 및 디지털콘텐츠 기반 마케팅 지원
12. 그 밖에 해외시장 진출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30조(국제협력) 정부는 화장품기업 또는 관련 단체가 외국의 기관·단체 등과 산업협력활동을 추진하는 때는 관련 정보의 수집·제공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31조(화장품산업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화장품산업의 육성·지원에 필요한 각종 자료 또는 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 및 제공하기 위하여 화장품산업통합정보시스템(이하 “통합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화장품법」 제33조의3에 따른 화장품통합정보시스템과 상호연계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관련 기관·단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공 및 관계 전산망 이용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요청을 받은 기관 및 단체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제정안】 화장품산업 기반조성(안 제5장)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업무를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업무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32조(중소·중견기업의 우대) 정부는 화장품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제21조 및 제22조, 제27조, 제29조에 따른 지원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대할 수 있다.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2.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중견기업자

나. 검토의견

□ 제정안은 화장품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각종 지원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마련함으로써 이해관계자의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고, 화장품 소재·원료와 용기·포장재 등의 부자재부터 완제품의 생산·유통·판매에 이르는 화장품산업 가치사슬 전반에 대한 투자 환경의 기반을 안정적으로 조성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 참고로, 보건복지부는 화장품 제품의 단가 대비 원료비 비중을 8%로 가정한 가운데 전체 화장품 생산액과 원료 수출·수입액 등을 바탕으로 우리나라 화장품기업의 ‘원료 자급률’이 약 16%인 것으로 추산하였음.

□ 다만, 제정안의 제5장(화장품산업 기반조성)과 관련하여서는 다음 사항이 논의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 첫째, 안 제26조의 조 제목은 ‘화장품산업 종합지원센터’로 정하여져 있는데,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는 보건복지부장관이 ‘화장품산업 종합센터’를 설치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기관 또는 단체를 ‘화장품산업 종합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화장품산업 종합센터’와 ‘화장품산업 종합지원센터’의 관계가 불명확한 측면이 있으므로, 화장품산업의 육성과 화장품기업의 시장 진출 등을 지원하는 기관의 설치·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 참고로, 「제약산업육성법」에서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의약품 임상시험 기반 조성과 국내외 투자유치를 위하여 ‘임상시험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 그 설치·운영을 해당 업무에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고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⁷⁰⁾

「의료기기산업법」에서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기기기업의 시장 진출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을 ‘의료기기산업 종합지원센터’로 지정하고, 그 사업수행에 필요한

70)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의2(임상시험지원센터의 설치·운영)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의약품 임상시험 기반 조성 및 국내외 투자유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임상시험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임상시험 기반 구축 등 국내외 임상시험 관련 지원 사업
2. 임상시험 활성화를 위한 제도의 조사·연구
3. 임상시험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 인증 및 지원
4. 임상시험 관련 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
5.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임상시험지원센터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임상시험지원센터의 설치·운영을 그 업무에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항에 따른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 요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탁받은 법인 또는 단체의 장이 할 수 있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위탁받은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그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⑤ 임상시험지원센터의 설치·운영과 제3항에 따른 위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⁷¹⁾

- 한편, 안 제26조와 관련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28년 1월 1일 시행 예정인 「화장품법」 제18조의3⁷²⁾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화장품 및 원료의 안전성과 관련한 정보를 제공하는 ‘화장품안전정보센터’의 운영을 지원할 수 있게 되므로 ‘화장품산업 종합지원센터’를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규제정보 지원사업과 연계하고, 그 운영 현황을 보건복지부장관 및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보고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고,

중소벤처기업부는 제정안의 지원대상인 화장품기업에 중소·벤처기업이 포함되는 점을 감안하여 화장품산업 종합지원센터 설치 주체를 ‘보건복지부장관’에서 ‘정부’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71)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제33조(의료기기산업 종합지원센터)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기기기업의 시장 진출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을 의료기기산업 종합지원센터로 지정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1. 제10조제2항 및 제12조제2항에 따른 혁신형 의료기기기업에 대한 인증 및 재평가에 필요한 지원업무
 2. 의료기기시장 진출절차에 관한 상담 및 자문
 3. 의료기기시장 진출과 관련된 정부·공공기관의 지원사업 연계
 4. 의료기기시장 진출 관련 애로사항 발굴 및 해소 지원
 5. 그 밖에 의료기기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 ② 의료기기산업 종합지원센터로 지정받은 기관의 장은 매년 사업계획 및 예산·결산에 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고, 사업실적을 정기적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 ③ 국가는 의료기기산업 종합지원센터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기기산업 종합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의료기기산업에 관련된 중앙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 또는 임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 ⑤ 의료기기산업 종합지원센터의 지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72) 법률 제21032호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

제18조의3(화장품안전정보센터 지정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화장품 안전성 평가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관계 기관·법인 또는 단체를 화장품안전정보센터(이하 “화장품안전정보센터”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② 화장품안전정보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화장품 안전성 평가에 관한 전문적 기술지원 및 자문에 대한 응답
2. 원료 안전성 정보 제공
3. 화장품 안전성 평가를 위한 각종 정보의 수집·관리·분석·평가 및 제공
4. 안전성 평가자 양성 지원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업무에 필요한 시험·조사·연구 및 교육·홍보
6. 그 밖에 화장품 안전성 확보에 관한 사항으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사업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화장품안전정보센터에 대하여 제2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화장품안전정보센터 지정의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25. 12. 30. 본조신설, 2028. 1. 1. 시행]

□ 둘째, 안 제29조제10호는 정부가 화장품산업의 수출 경쟁력을 높이고 해외시장 진출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화장품법」 제30조에 따른 수출용 제품에 대한 해외 안전성 평가 정보 제공 및 컨설팅 등의 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화장품법」 제30조는 ‘국내에서 판매되지 아니하고 수출만을 목적으로 하는 제품’에 대하여 이 법(「화장품법」)의 일부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수입국의 규정에 따를 수 있다는 예외를 규정하면서도 “수출용 제품”이라는 용어를 따로 정의하거나 약칭하고 있지는 아니하므로,⁷³⁾

안 제29조제10호 중 “「화장품법」 제30조에 따른 수출용 제품”은 ‘국내에서 판매되지 아니하고 수출만을 목적으로 하는 화장품’으로 수정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 한편,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안 제29조 각 호에 규정된 해외시장 진출 지원 사업 가운데 인·허가나 규제와 관련된 제8호부터 제10호까지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화장품법」 제33조 및 제33조의2⁷⁴⁾에 따라 예산사업으로 수행하고 있고, 화장품 안전성 평가 정보 제공 및 컨설팅 등의 지원은 같은 법 제18조의3⁷⁵⁾에 따른 화장품안전정보

73) 「화장품법」

제30조(수출용 제품의 예외) 국내에서 판매되지 아니하고 수출만을 목적으로 하는 제품은 제4조, 제8조부터 제12조까지, 제14조, 제15조제1호·제5호, 제16조제1항제2호·제3호 및 같은 조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수입국의 규정에 따를 수 있다.

74) 「화장품법」

제33조(화장품산업의 지원) 보건복지부장관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화장품산업의 진흥을 위한 기반조성 및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재원을 마련하고 기술개발, 조사·연구 사업, 해외 정보의 제공, 국제협력체계의 구축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33조의2(국제협력)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화장품의 수출 진흥 및 안전과 품질관리 등을 위하여 수입국·수출국과 협약을 체결하는 등 국제협력에 노력하여야 한다.

75) 법률 제21032호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

제18조의3(화장품안전정보센터 지정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화장품 안전성 평가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관계 기관·법인 또는 단체를 화장품안전정보센터(이하 “화장품안전정보센터”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센터의 업무이므로 향후 사업 중복이나 혼선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각 부처의 업무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 셋째, 안 제30조는 정부가 직접 국제협력을 수행하도록 하려는 것이 아니라 화장품기업이나 관련 단체의 국제적인 산업협력활동을 정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규정이므로, 조 제목을 ‘화장품기업 등의 국제협력 지원’ 등으로 수정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참고로, 「제약산업법」 제21조에서는 제약기업 또는 관련 단체가 외국의 기관·단체 등과 산업협력활동을 추진하는 때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관련 정보의 수집·제공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그 조 제목은 ‘제약기업의 국제협력활동 지원’임.⁷⁶⁾
- 한편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안 제30조가 국제협력 지원에 관한 포괄적·선언적 규정이고, 우리나라 화장품 영업자가 해외 인·허가 및 등록에 필요한 규제를 이행할 수 있도록 규제당국 간에 협의하고 상호 인증을 강화하는 것이 국제협력의 핵심인 점 등을 감안할 때, 안 제1조에서 ‘국제협력’을 이 법의 주요 목적 중 하나로 보는 것은 어려운 측면이 있다는 입장임.

② 화장품안전정보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화장품 안전성 평가에 관한 전문적 기술지원 및 자문에 대한 응답
2. 원료 안전성 정보 제공
3. 화장품 안전성 평가를 위한 각종 정보의 수집·관리·분석·평가 및 제공
4. 안전성 평가자 양성 지원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업무에 필요한 시험·조사·연구 및 교육·홍보

6. 그 밖에 화장품 안전성 확보에 관한 사항으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사업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화장품안전정보센터에 대하여 제2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화장품안전정보센터 지정의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25. 12. 30. 본조신설, 2028. 1. 1. 시행]

76)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1조(제약기업의 국제협력활동 지원) 보건복지부장관은 제약기업 또는 관련 단체가 외국의 기관·단체 등과 산업협력활동을 추진하는 때에는 관련 정보의 수집·제공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넷째, 안 제31조제1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화장품산업의 육성·지원에 필요한 각종 자료나 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제공하기 위하여 ‘화장품산업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하면서(전단), 이 경우 「화장품법」 제33조의3⁷⁷⁾에 따른 ‘화장품통합정보시스템’과 상호연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인데(후단),

이와 관련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화장품법」 제33조의3에 따른 화장품통합정보시스템은 영업상의 비밀 및 개인정보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이를 제정안에 따른 화장품산업통합정보시스템과 상호연계하려면 정보 취득자의 자격, 활용성 등 법적 사항과 기술적 요소 등에 대하여 사전 검토·협의를 요구되는 측면이 고려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고,

중소벤처기업부는 제정안의 지원대상인 화장품기업에 중소·벤처기업이 포함되는 점을 감안하여 화장품산업통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주체를 ‘보건복지부장관’에서 ‘정부’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77) 법률 제21032호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

제33조의3(화장품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화장품 안전 관리에 필요한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화장품통합정보시스템(이하 “통합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관계 기관·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등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2025. 12. 30. 본조신설, 2026. 12. 31. 시행]

□ 다섯째, 안 제32조에서는 ‘정부’가 연구개발(안 제21조), 시험·평가(안 제22조), 화장품 원료·용기 산업(안 제27조) 및 해외시장 진출 지원(안 제29조)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중견기업을 우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여러 부처와 관련되는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지원 주체가 보건복지부장관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면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우대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6. 보칙 및 벌칙(안 제6장: 안 제33조부터 제38조까지)

가. 제정안의 내용

□ 제정안은 보건복지부장관이 혁신형 화장품기업 인증을 취소할 때 청문을 거치도록 하고(안 제33조),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소속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등에 위탁할 수 있게 하며(안 제34조),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나 혁신형 화장품기업 인증 전담기관, 혁신형 화장품기업의 연구개발 관련 정보를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기관, 화장품산업 종합지원센터 및 화장품산업 지원업무 일부를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수탁한 기관에서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임직원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⁷⁸⁾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보도록 하고(안 제35조),

혁신형 화장품기업 인증을 사칭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면서(안 제36조), 혁신형 화장품기업의

78) 「형법」

제127조(공무상 비밀의 누설)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제129조(수뢰, 사전수뢰) ①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②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될 자가 그 담당할 직무에 관하여 청탁을 받고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후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제130조(제삼자뇌물제공)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뇌물을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를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제131조(수뢰후부정처사, 사후수뢰) ①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전2조의 죄를 범하여 부정한 행위를 한 때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상 부정한 행위를 한 후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제삼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를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③공무원 또는 중재인이었던 자가 그 재직 중에 청탁을 받고 직무상 부정한 행위를 한 후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④전3항의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

제132조(알선수뢰)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인증을 신청한 기업이나 혁신형 화장품기업이 정당한 사유 없이 관계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8조).

【제정안】 보칙 및 벌칙(안 제6장)

제33조(청문)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3조에 따라 혁신형 화장품기업 인증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34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기관의 장,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화장품산업 지원업무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보건산업진흥원법」에 따른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35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 제16조제1항 및 제23조제2항, 제26조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기관의 임직원과 제34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기관에서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임직원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36조(벌칙) 제10조제3항을 위반하여 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인증서·인증마크를 제작·사용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인증을 사칭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7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6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8조(과태료) ① 정당한 사유 없이 제14조제1항에 따른 관계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나. 검토의견

□ 이 법의 시행에 필요한 행정절차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제재수단인 벌칙·과태료 등에 관한 사항이 규정된 안 제6장(보칙 및 벌칙)과 관련하여서는 다음 사항이 논의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 첫째, 「행정절차법」에서는 행정절차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행정절차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규정하면서 행정청이 인허가 등을 취소하거나 신분·자격을 박탈하는 처분을 할 때에는 청문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⁷⁹⁾

혁신형 화장품기업 인증 취소는 그 자격을 박탈하는 처분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은 「행정절차법」에 따라 청문을 거쳐야 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보건복지부장관이 혁신형 화장품기업의 인증을 취소하려는 경우 청문을 하도록 규정한 안 제33조는 불필요할 것으로 보임.

- 다만, 「제약산업법」 제11조⁸⁰⁾와 「의료기기산업법」 제40조 제1항⁸¹⁾에서 각각 혁신형 제약기업과 혁신형 의료기기기업의

79) 「행정절차법」

제3조(적용 범위) ① 처분, 신고, 확약, 위반사실 등의 공표, 행정계획, 행정상 입법예고, 행정예고 및 행정지도의 절차(이하 “행정절차”라 한다)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2조(의견청취) ①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한다.

1. 다른 법령등에서 청문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2. 행정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다음 각 목의 처분을 하는 경우
 - 가. 인허가 등의 취소
 - 나. 신분·자격의 박탈
 - 다. 법인이나 조합 등의 설립허가의 취소

80)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청문) 보건복지부장관은 제9조제1항에 따라 인증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81)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제40조(청문)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3조에 따라 혁신형 의료기기기업 인증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인증 취소에 앞서 청문 절차를 거치도록 규정한 입법례가 있음.

- 둘째, 안 제34조제1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게 하려는 내용인데,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1호⁸²⁾에 규정된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종류 중 ‘특별자치시’가 제외되어 있으므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는 대상에 ‘특별자치시장’을 추가할 필요가 있으며, “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의미하는 것으로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 셋째, 안 제36조는 혁신형 화장품기업 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인증서·인증마크를 제작·사용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인증을 사칭한 자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려는 것인데,

안 제10조제3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혁신형 화장품기업 인증을 받은 기업에 대하여 인증서를 교부하고 인증마크를 제작하여 사용할 수 있게 하려는 규정이고, 같은 조 제4항에서 그 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인증서·인증마크를 제작·사용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인증을 사칭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므로, 안 제36조 중 “제10조제3항을 위반하여”는 정확한 조문을 인용하여 명확성이 제고되도록 ‘제10조 제4항을 위반하여’로 수정될 필요가 있음.

문 의 처

02)6788-5506

82) 「지방자치법」

제2조(지방자치단체의 종류) ① 지방자치단체는 다음의 두 가지 종류로 구분한다.

1.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